

교육 일정

회차	날 짜	시 간	강 의 명	선 택
1	4. 17. (월)	오전 9: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의 방향• 강 사 :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2	4. 18. (화)	오전 9: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 : 주민자치의 이해 및 기본개념교육• 강 사 : 하경환(함께자치연구소 공동대표)	
3	4. 22. (토)	오전 9: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마을의제발굴과 마을계획수립• 강 사 : 이도화(주민자치교육전문강사)	
4	4. 22. (토)	오후 13:3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 : 주민자치회 위원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기술• 강 사 : 조재학(함께이룸 대표)	

2023 상반기

대덕구 주민자치학교

CONTENTS

01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의 방향	01
	-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02	주민자치의 이해 및 기본개념교육	37
	- 하경환(함께자치연구소 공동대표)	
03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마을의제발굴과 마을계획 수립	55
	- 이도화(주민자치교육전문강사)	
0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기술	79
	- 조재학 (함께이룸 대표)	
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15

01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의 방향

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의 방향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2023. 4. 1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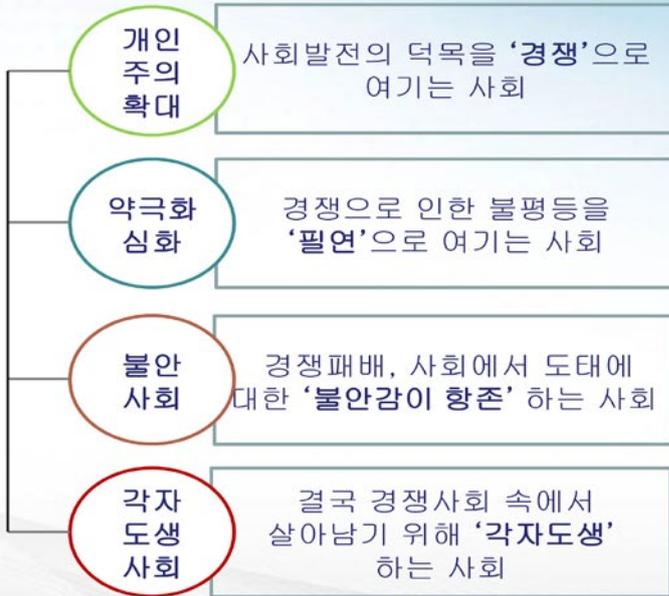
- 발표목차 -

-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 III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1. 우리사회의 현실: 1) 경쟁사회, 양극화



(금수저와 흙수저, 출처: 국민일보)

소득하위 20% 평균소득: 132만원(18년 2분기)
 소득상위 20% 평균소득: 913만원(18년 2분기)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1. 우리사회의 현실: 2) 압축성장, 낮은 행복감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2. 지방자치의 개념과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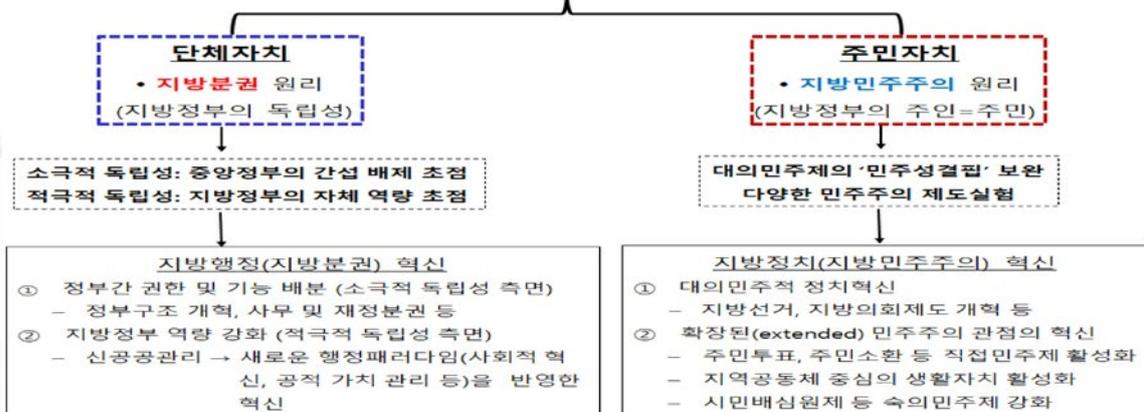
- ✓ <정치·지리학적 관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위계적 관계보다, **지방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강조함**
- ✓ <법률적 관점>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력**으로 정의됨, 즉,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으로 정의됨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2. 지방자치의 개념과 원리: 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원리 (이론적 배경)



출처: 곽현근(2018)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3. 지방민주주의 원리와 대안적 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와 주민주권

- ✓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지방민주주의’**,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된다는 의미로 **‘주민주권’**을 전제로 함
- ✓ 주민주권에 기초한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대의민주제’**가 전부라는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심화된 다양한 민주주의 가능성을 제공함

7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4. 현재 논의되는 지방자치의 정의 및 분류



8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5. 지방민주주의 원리와 대안적 민주주의

- ✓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는 어떠한 제도(무엇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가?

‘대의민주제’

- ✓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의 원리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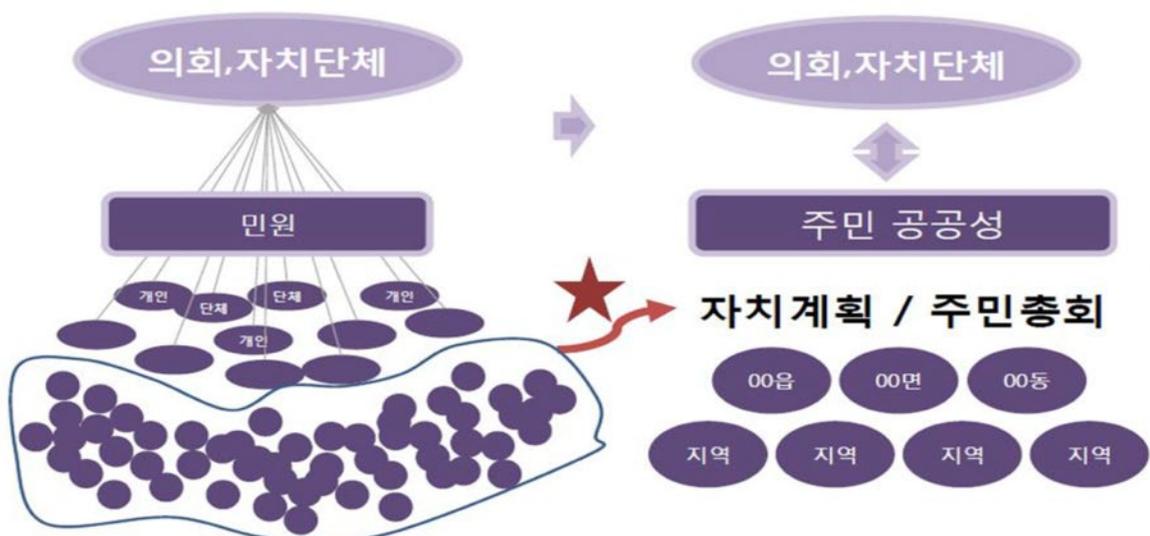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핍 보완’

9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5. 지방민주주의 원리와 대안적 민주주의

[주민자치에서의 변화]



자료: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2023)

10

I.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자치

5. 지방민주주의 원리와 대안적 민주주의

- ✓ 직접민주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 ✓ 풀뿌리 민주주의(결사체 민주주의)=풀뿌리 주민자치
- ✓ 숙의민주제: 공론적 여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제
- ✓ 고객(시장) 민주제: 주민을 고객으로 주민을 지향

11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1. 풀뿌리 주민자치: 1) 사회적 자본과 마을공동체(곽현근, 2019)

•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풀뿌리 주민자치

- ✓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의미의 학술적 용어가 바로 '사회적 자본'으로 논의됨
- ✓ 여기서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 '**신뢰, 호혜, 네트워크**'로 곧 **마을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임/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풀뿌리 주민자치란?

사회적 자본 = 구성원 사이 네트워크, 신뢰, 호혜의식 = 사회적, 심리적 유대

* 마을공동체=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살고 있는 장소, 사람에 대해 사회,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12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2. 왜 마을인가?

- ✓ 왜 마을인가?
- ✓ 때론 이웃관계가 문제해결의 해법이 되기도 함
- ✓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소연하고, 궁리하고, 협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을 **‘이웃들의 관계망’**이라 고함
- ✓ 전통적 관점에서 관료주도, 시민단체 주도로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스스로 나서야 시민단체와 국가도 참여해 노력할 것임. 그래서 마을이 바로 **‘혁신의 불씨’, ‘희망의 마중물’**임

13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3. 마을의 등장과 연결, 그리고 성장

- ✓ 토크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 ✓ 그렇다면 그 중에서 “마을은 민주주의의 더 중요한 학교다”
- ✓ 등장과 연결 다음에 고민해야할 것은 바로 **‘성장’** 일 것임
- ✓ 관계망(네트워크)는 바로 마을의 씨앗
- ✓ 씨앗이 뿌리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정부의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14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3. 마을의 등장과 연결, 그리고 성장: 공론장의 중요성

- ✓ **공공성은?** 평등한 주민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합의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됨(유창복, 2021)
- ✓ 마을공공성은 => 시민공공성 => 국가공공성
- ✓ 결국 **마을**은 '**공공성의 혁신**'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됨
-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 '**나와 다른이와 동행**'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임
- ✓ 더 나아가 이를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고 융합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공론장**'이 매우 절실함

15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3. 마을의 등장과 연결, 그리고 성장

- ✓ 지방자치단체 마다 마을의 등장과 연결(세종시의 경우 시범적으로 네트워크 파티)
- ✓ 시정 3기 부터 본격적으로 자치분권 5대 12개 과제 도출과 함께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확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등
- ✓ 그에 상응하는 조례 제정 등 노력
- ✓ 5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 가능, 이렇게 주민모임이 확대되기 시작함. 비슷한 동네와 의제의 연결에 대한 수요 증대
- ✓ 나의 필요=>이웃의 필요 => 동네의 필요 => 문제 해결력

“마을의 공공성”

16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4. 지역공동체 주축조직의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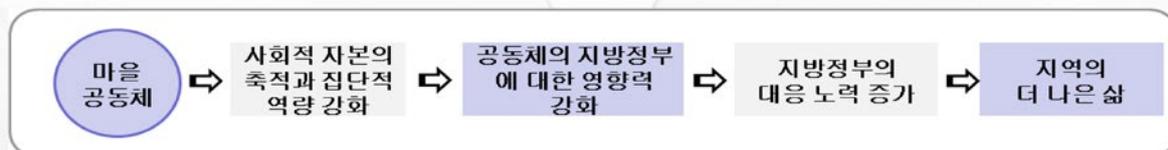
- ✓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것인가?
- ✓ 지역공동체 조직 혹은 공동체 집단(마을)
- ✓ 지역공동체 주축조직 = 주민자치회

17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4. 지역공동체 주축조직의 기능 및 역할

- 수평적 참여(민초의 공간)
 - ✓ “친숙한 거주지 주변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 공동체 역량을 형성해 지역 의제를 발굴-해결해나가는 과정 또는 활동을 지칭함”/주민들만의 활동 공간, 정부와 독립적
- 수직적 참여(초대된 공간)
 - ✓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마련한 공식적 제도에 공동체 조직 및 대표가 참여해 정부 또는 다른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정부가 제공하는 참여제도



18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4. 지역공동체 구축조직의 기능 및 역할

• 지역공동체 구축조직: 주민자치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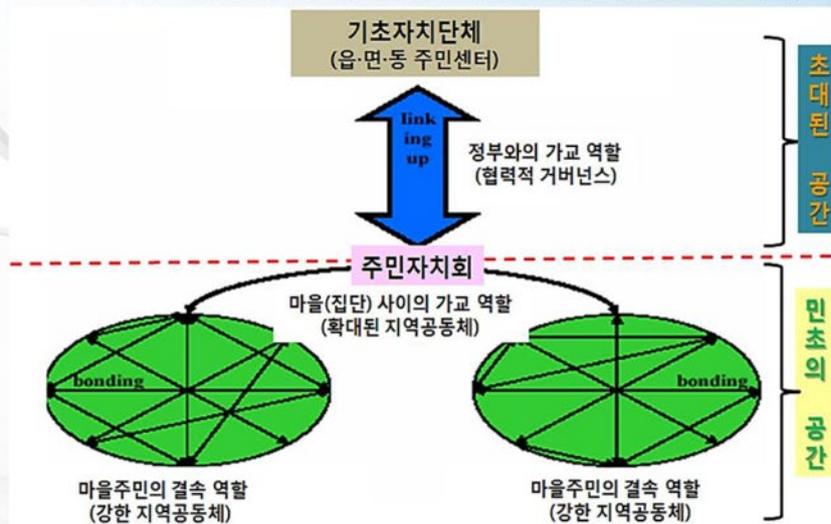
- (1) **기반**: 물리적 공간의 소유와 관리
- (2) **주민의 의견수렴**: 지역욕구 파악, 적합한 서비스
- (3) **촉진자**: 공동체 형성, 주민결속의 촉진
- (4) **지역공동체 조직 촉매자**: 지역사회 활동지원
- (5) **소득창출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촉진수단
- (6) **중개자**: 지역공동체와 정부간 가교 역할 수행

19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4. 지역공동체 구축조직의 기능 및 역할

[지역공동체 구축조직의 역할: 주민자치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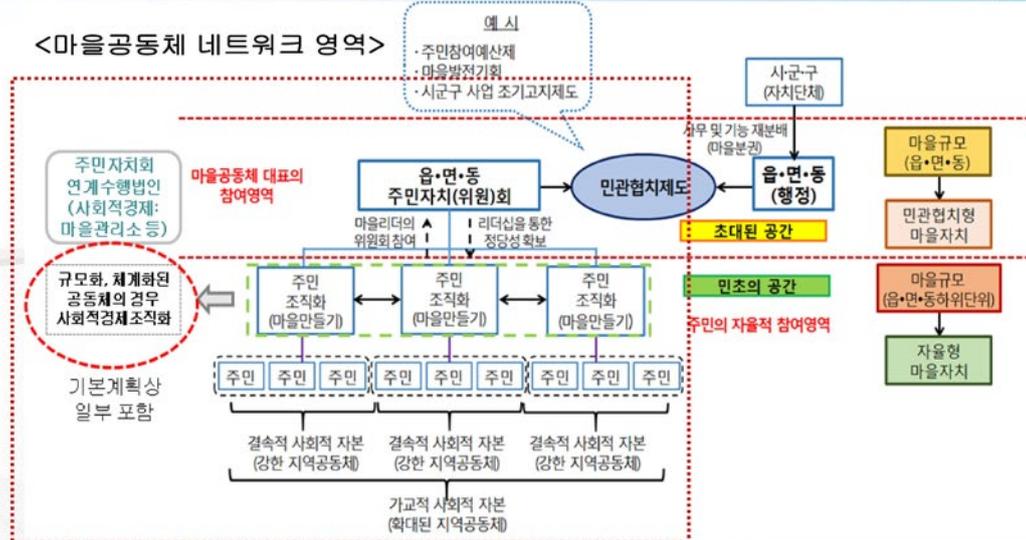
자료: 곽현근(2018)

20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5. 세종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영역 정의

[지역공동체 주축조직과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21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6. 주민자치회 연혁

- ✓ (1) 주민센터
- ✓ 1999년 민원발급, 사회복지와 같은 주민에 밀접한 사무를 제외, **청소, 주택, 교통, 일반행정 사무** 시군구청으로 이관하는 읍면동 행정 기능전환

※ 1998년 IMF 국가 부채 위기상황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개혁요구, 정부조직 축소 논의 본격화, 이 과정에서 읍면동 사무소 폐지 논의, 그러나 공무원의 저항으로 행정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수준으로 본청에 많은 권한을 이관함

- ✓ 본청에 행정인력이 이관하고 남은 유휴공간에 문화와 복지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과 심의권 부여

22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6. 주민자치회 연혁

✓ (2)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 및 발전하기 위한 논의 본격화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한 3개 모델 도출-협력형, 통합형, 주민주식형, 현행법상 협력형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 ✓ '13년 전국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범실시됨
- ✓ 이후, 시범실시 지역이 15년 49개, 17년 83개소로 증가 함. 2017년 표준조례안 개정, 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설치 대폭확대

23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6. 주민자치회 연혁

- ✓ '19년 12월 408개, '21년 6월 626개, '21년 6월 777개, '21년 12월 1,013개로 확대함

※ 18년 표준조례안 개정:
위원선정위원회 폐지, 공개모집 강화, 주민총회, 분과위 개방성 등 내용을 담음

※ 현재까지 6번의 개정/자치제도과(2013.6.20.), 1차 개정: 자치제도과(2014.7.24.), 2차 개정: 자치제도과(2015.6.17.), 3차 개정: 자치제도과(2017.2.1.), 4차 개정: 자치분권과(2018.8.30.), 5차 개정: 자치분권제도과(2019.8.28.), 6차 개정: 자치분권제도과(2020.4.20.)

24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6. 주민자치회 연혁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95.5	도 및 특별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논의(신한국당 정책토론회)
1996.12	자치구 구성장의 임명제 논의(서울시 지역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1998.3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1999	주민자치센터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운영토록 규정
2005.10~2006.2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해 행정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읍·면·동 준 자치단체화, 지방광역행정기구 설치제안
2008.2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시킴
2008.8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 결정(민주당)
2008.9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에 대한 합의(대통령과 민주당 대표합의)
2008.11~2009.2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2009.3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본회의 의결로 통과
2009.3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설치
2010.4 ~2010.9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확정 및 본회의 통과
2010.9~2010.1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9월)·시행(10월)
2012.12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기본방향 의결
2013.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3.7~2014.12	전국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14.12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시점)
2014.12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 채택
2015.10	전국 18개 지역 시범지역 추가선정, 2016년 12월까지 사업 연장
2017.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확기적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실질화' 포함
2018.0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2018.9~2019.3	자치분권종합계획, 자치분권시행계획(안)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고려
2019.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 실질적 주민주권의 강화
20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 제외
2021.5	주민자치 법제와 네트워크
2021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등 8개 법안

25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6. 주민자치회 연혁

✓ '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의결됨

✓ 주민자치회 조항이 전부 삭제됨(제26조 전체)

제26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26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7. 주민자치회 기능 및 제도비교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지역개발 : 읍·면·동 단위 지역 발전계획, 지역자원 활용 마을 만들기 등 - 주민 간 이해 조정 : 지역 내 행정 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 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 등 - 시·군·구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지역 내 투자유치 계획, 교통신호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관리 - 마을 휴양지 관리 - 저소득 노인 도시락배달사업 -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읍·면·동 각종 행사 -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 생활협동조합 운영 - 동호회, 스포츠 활동 - 자율 방법 및 안전 귀가 활동 - 등하교길 안전관리 등

자료: 안전행정부(2013: 12); 이병령 & 이종수(2015); 김홍주(2019)

II.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8. 주민자치회 운영상 한계

1. '주민의 참여 부족
2. 주민총회가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 현장이라기 보다는 행사장이 되고 있음. 한 예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고, 당연히 위원들의 가족들도 참여하지 않음
3.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문제
4.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고민이 필요
5. 공론장, 대화의 장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행사로 진행
6. 주민총회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함

주민총회에 대한 선거법 제한 과도하여 주민들을 위한 음식, 기념품 등의 제공이 어려운 것도 주요 문제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1. 현정부의 국정과제: 1)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열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해커국가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⑳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㉑ 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웅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㉒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㉓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1. 현정부의 국정과제: 2) 국정목표와 전략

[국정목표와 전략]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약속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1. 현정부의 국정과제: 2) 국정목표와 전략

국정과제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국정과제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 직접 플랫폼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2. 법제화 필요성: 1) 주민자치 법제화 미비로 인한 한계

- ✓ 현재 우리나라는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시민조직** 등 지역에 다양한 주민공동체 조직에 대한 권한부여가 미비함
- ✓ 주민주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권한부여에 관한 법제화에는 여전히 한계
- ✓ 주민의 주권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부재, 의견수렴 정도의 **주민참여 정도**만 포함됨

※ 약칭) 농업인삶의질법('17.10 시행), 도시재생특별법('18.4 시행)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2. 법제화 필요성: 1) 주민자치 법제화 미비로 인한 한계

✓ 현 자치분권특별법의 한계, 시범실시로 운영되도록 규정함. 안정적 법제도적 뒷받침의 한계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33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2. 법제화 필요성: 1) 주민자치 법제화 미비로 인한 한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분권특별법 등 두 통합 법안의 주요내용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2. 법제화 필요성: 2) 주민자치 법제화 요구와 필요성

✓ 무엇보다, **주민자치 실질화(안정화)**를 위해서 법제화가 요구됨(전면실시)

※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근거함

✓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체인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주축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에 대한 **권한부여에 대한 법제적 뒷받침** 필요

✓ 셋째, 대의민주제적 요소가 가진 **민주성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보완하고, 소지역의 마을 단위에서의 **주민주권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3. 법률검토: 1)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특징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김영배안	한병도안	박완수안	이해식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27조 설치(풀뿌리자치/읍면동)	○	○	○	○
28조 기능(위수탁)		○	○	○
29조 구성 ③ 법률 ④ (시범실시) / 지원	법률	③ 조례 지원 ○	③ 조례 지원 X	조례 / 규약 지원 ○

자료: 오세범(2022), 주민자치 전국민관학 포럼

한병도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박완수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조항을 다수 반영한 특징을 지님(설치 및 행재정적 지원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조문을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사항은 개별법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삭제되었던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한 형태임 (설치 및 행재정적 지원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금지함

III.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3. 법률검토: 2)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안 특징

쟁점	이명수안	김두관안	김철민안	김영배안
목적	분권/자치	주민자치실질화	주민자치활성화 /민주적참여의식 고양	돌부리자치활성화
정의	마을/주민/회원 주민자치회X(=대표) 주민총회=최고의결기구	마을/주민/회원 주민자치회=대표/수행조직 주민총회X	X 주민총회(회의) 주민자치회(수행조직)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내 효율적 수행조직)	주민/회원X/분회/분과 주민자치회=집행기구 주민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	회원(세대별대표)	회원(세대별대표/사업장대표)	자치회원(주민등록/사업장대표+종사자) 조례→기관,단체,교직원	주민(주민등록,입국인등록) 조례→기관/사업체/학생,교직원
기능(역할)	X	발기인(회원-1/10이상) 참관총회(회원-1/3+과반수)	주민총회정족수(조례/규약/출석의과반수)	주민총회요건(조례)
법인	법인(임의)	사단법인(임의)	X	공법인(규정)
위원	X	X	(50명이내)추천	추천
임원	규약(대표자1/감사2)	규약(대표자1/감사2)	회장1/부회장(조례) /감사1(외부가능)	조례/규약
사무국	X	X	감사1	인력(지방공무원)+예산 주민자치회추천(임기제할당)
재정	지원 가능(간접X) 회비,보조금 주민세 전액	지원 가능(간접X) 회비,보조금	지원 가능 X	지원 의무 특수목적법인설치/출연 국공유재산활동특례 (우선매각/무상사용) 주민세율 조정
협의체	시군구/시도/전국	시군구/시도/전국	행정안전부령	시/군/구
정보제공	X	X	X	요청→의무
공민권 행사	X	X	X	권리/공적의무

자료: 오세범(2022), 주민자치 전국민관학 포럼

37

III.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3. 법률검토: 2)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안 특징

김영배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김철민 의원(안)	김두관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가능과 권한을 높이기 위해 제안. 다만,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간의 역할 구분에서 논의할 점이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여타 공동체 조직 등에서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임/법인격 부여(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유일한 국민의회 소속 의원의 발의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운영조례와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법인으로서 법인격 부여 선택조항, 창립총회 개최 등 설립인가 절차(법인 설립절차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법인격이어서 수익사업에 있어서 보다 자율성이 부여됨. 위탁에 대한 의무조항(주민자치센터)

• 꼭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위탁의 의무조항에서 주민자치센터만 해당되어야 하는지? 등

38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4. 법률안 검토를 통한 쟁점사항: 1) 주민자치 법제화 시 고려사항

- ✓ 먼저, 읍면동 소지역의 행정범위 고려/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의 최소단위로 시군구,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로 부터의 자치를 위한 최대단위
- ✓ 둘째, 대의제와 차별화되는 보완적 민주제도로서 그 특징 설명(법안의 제정 및 개정 이유)
- ✓ 셋째, 현재 협력형 모델에서 읍면동의 준지방자치 단체화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읍면동 행정의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회 기능 중 협의사무 실질화

39

Ⅲ.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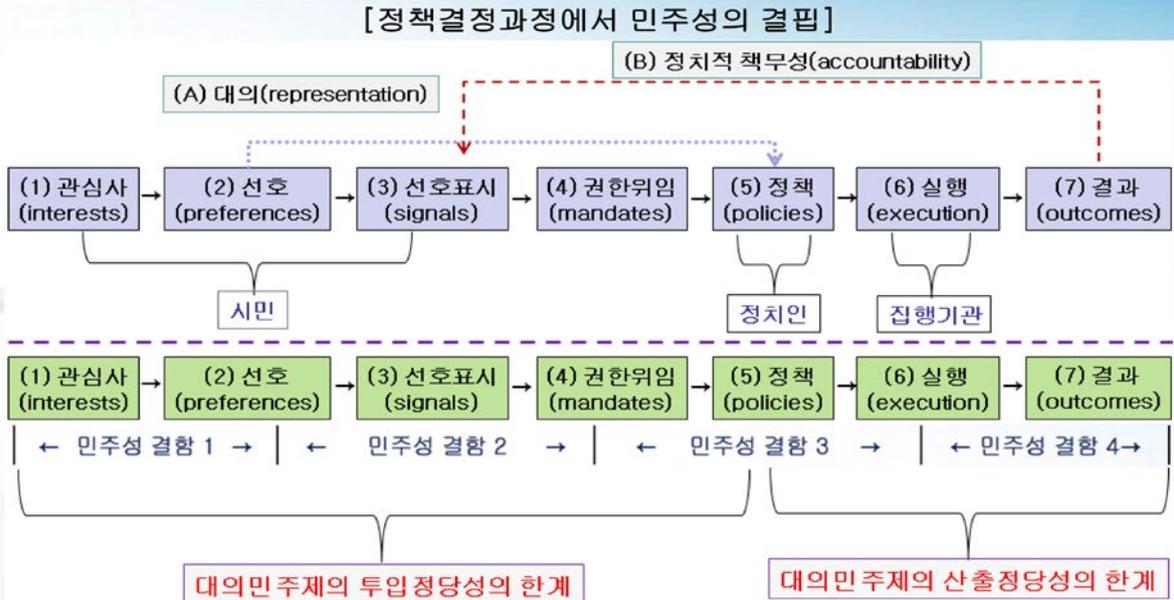
4. 법률안 검토를 통한 쟁점사항: 2) 쟁점사항 도출

- ✓ 1) 주민자치의 회원 자격
- ✓ 2) 주민자치회 구성방식
- ✓ 3) 법인격 부여 vs 비법인 사단 유지
- ✓ 4) 주민자치회 vs 주민총회 구분
- ✓ 5)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방식(대표성 확보차원)
- ✓ 6) 일반법(지방자치법) vs 개별법
- ✓ 7) 행재정적 지원

40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1. 대의제도와 보완적 민주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차별성



자료: Fung(2004)

41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1. 대의제도와 보완적 민주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차별성

- ✓ 풀뿌리 민주주의 vs 대의제 관계 검토
- ✓ 대의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삭감조정, 단체장견제, 조례제정(입법)권 등의 주요기능이 있음
- ✓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사무감사, 단체장견제, 예산삭감조정, 입법권이 없음/다만 주민조례발안 법제정으로 인해 입법권이 주민영역에서 발휘 될 수 있는 점이 있음

42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1. 대의제도와 보완적 민주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차별성

- ✓ 간단히,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지역회의(참여예산)에서 **집행부가 가진 권한(예산편성권)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정도임.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편성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승인, 결산, 감사가 주요 기능임
- ✓ 이를 볼 때, 역할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상호보완적 발전 방향의 설정이 중요함”**

43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1) 주민자치회 회원자격

- ✓ 법안(8개 중 7개 법안) 검토를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회원 자격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 ✓ 먼저, **해당 읍면동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는 안
- ✓ 둘째, 해당 **읍면동 주민 중 참여를 원하는 주민** 만 회원이 되는 안
- ✓ 셋째, **주민자치회의 위원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는 안

44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2) 주민자치회 구성방식

- ✓ 주민자치회 구성방식에 대한 제안은
- ✓ 첫째, 일률적 구성 방식
- ✓ 둘째,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선택하는 방식
- ✓ 셋째,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통한 구성방식

45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3)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여부

- ✓ 법안(8개 중 7개 법안) 중 김영배(법인격 명시), 김두관 의원이 법인격(사단법인)을 논의함
- ✓ 법인격 부여시 장점: 분쟁시 당사자 자격 및 책임 주체 구분, 세법상 조세감면 특례 적용, 재정 및 회계관리에서 투명성 확보, 재산 소유 및 수익사업, 거래관계에서 의무주체 명확화
- ✓ 단점: 상급기관으로 통제 감독인한 자율성 저하 (행정적 사법적 규제), 재정 및 회계관리, 고유업무 수행에 책임소재 등 어려움
- ✓ 공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46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3)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여부

- ✓ 먼저, 비법인 사단을 유지하는 안
- ✓ 둘째, 법인여부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안, 지자체 승인
- ✓ 셋째, 법인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47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역할 검토

- ✓ 먼저, 의결기구로서 총회 vs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
- ✓ 둘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 vs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서 주민총회

48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역할 검토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의 역할]

역할	내용
공동체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접근을 도움
공동체 재정관리자 (community financier)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공동체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본과 기회가 지방정부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역공동체로 유입되도록 지원
공동체 대변자 (community advocator)	공동체와 공공기관 사이의 중개역할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변화의 촉매자 역할을 하거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쟁점과 서비스에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도움
공동체 기반 지원자 (community infrastructure supporter)	지역의 다른 공동체 조직들의 조직화, 역량형성, 의사결정 및 참여기술의 향상 등을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자 (community empowerer)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적극적인 시민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

자료: 김홍주(2021:81)

49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역할 검토

- ✓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논의는
- ✓ 1) 주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옹호자, 대변자(마을의 제의 우선순위 결정) 역할/advocacy
- ✓ 2) 마을공동체의 형성자 역할
- ✓ 3) 공적 서비스의 전달자/제공자 역할
- ✓ 4) 지역 및 마을의 자산 활용(재정관리) 역할
- ✓ 주요 역할로 1), 2)를 무엇보다도 고려할 수 있음.
이에 중점적 검토가 필요함
- ✓ 이 개념이 바로 co-commissioning임(학술용어)

50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역할 검토

[공동생산의 유형과 예시]

공동생산의 유형		예시
공동커미셔닝 (co-commissioning)	정책의 공동기획 (co-planning of policy)	숙의적 참여, 마을계획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co-prioritization)	주민참여예산제
	서비스 공동재정지원 (co-financing)	기금모음, 세금인상 동의
공동설계 (co-design pf services)		사용자 상담, 서비스설계실험실, 고객여정지도
공동전달 (co-delivery)	서비스 공동관리 (co-management)	커뮤니티센터관리, 공공자산의 공동체관리
	서비스 공동수행 (co-performing)	동료지지집단, 간호사-가족파트너십, 자경단
공동평가 (co-assessment)		임차인 검사관, 사용자 온라인 평가, 참여적 마을진단

자료: Bovarird & Loeffler(2013:5); 박현근(2020); 박현근, 김홍주, 이현국(2022:214)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역할 검토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권한(기능) 예시]

구분	권한	비고
주민총회	읍면동 자치계획, 시행계획승인	
	읍면동 조례규칙 제개정 청구권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연계
	읍면동 주민세율 청구권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능: 주민총회 에서 최종 세율결정
	읍면동 일반예산 편성제안권	
	읍면동 자치규약 제개정 승인	
	법정기부금 운영계획 결산 승인	
	행정사무 위임 위탁사항 승인	
	주민투표, 조례개폐청구, 감사 청구 결정	
주민자치회	읍면동 예산 편성, 읍면동 행정사무 평가 사항 심의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결산승인	
	읍면동 지역발전계획권(계획수립 및 의견교환)	의견교환을 통한 계획수립
	읍면동 예산편성 제안권	자치단체 승인 사항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능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조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및 계획(안) 마련
	법정기부금 관리 운영 및 관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개정
	주민총회 운영	민간보조사업 집행 검토
	수익사업기관의 운영	연계 수행법인 설립
	행정사무 위탁권	행정재산 운영기준 검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위탁이 가능한 사 무 발굴
	개인정보 활용권	주민총회와 운영위원회 홍보, 투표 인단 구성, 범죄경력자 조회 등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원 명시화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그 밖에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역할 검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예시]

구분	정책지원 및 기능	비고
국가	행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은 균특회계 개정 사항(제35조)
	전문지원기관 운영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연계
	평가체계 구축	자자체 지원사항 평가
	종합계획수립(5개년)	
지방 자치단체	읍면동 지역발전을 위한 지정통계 제공	통계청장의 승인 사항
	행재정적 지원	주민자치계획에 근거(중장기, 연간)
	종합계획 수립(5년)	법률에 근거해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주민자치특별회계 혹은 기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	개방형, 추천제 등 검토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구성	조례 개정(전담 인력 및 기구지정)
	주민밀착형 사무 이관	부서별 전수조사와 수렴과정을 통해 이관
	읍면동별 자율예산편성제 도입	
	행정사무 정보자료 제공	

자료: 최인수(2020)

53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5)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 논의

- ✓ 먼저, 직접선거로 선출
- ✓ 둘째, 공개모집 및 무작위 추첨
- ✓ 셋째, 교육 이수자에 한해 추첨
- ✓ 넷째, 추첨 및 추천의 혼용안
- ✓ 다섯째, 위원선출에 대해 모두 조례 및 운영세칙에 위임

54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7) 주민자치회에 재정적 지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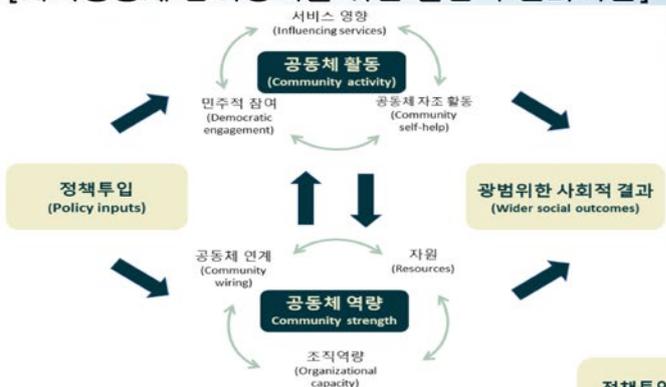
- ✓ 먼저, 순수 민간단체로서 국가 민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금하는 사항
- ✓ 둘째,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재량으로 두는 안
- ✓ 셋째,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두는 안

57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7) 주민자치회에 행재정적 지원 문제

[지역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적 변화이론]



자료: Rolfe(2016:101)

국내에서는 [곽현근\(2021\)의 연구에서 처음 소개됨](#)

[지역공동체 참여의 이중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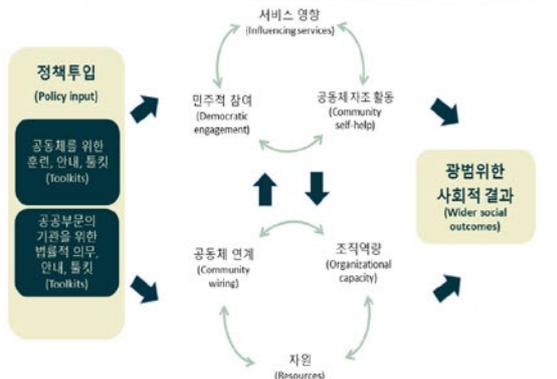
자료: Rolfe(2016:104)

58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7) 주민자치회에 행정정적 지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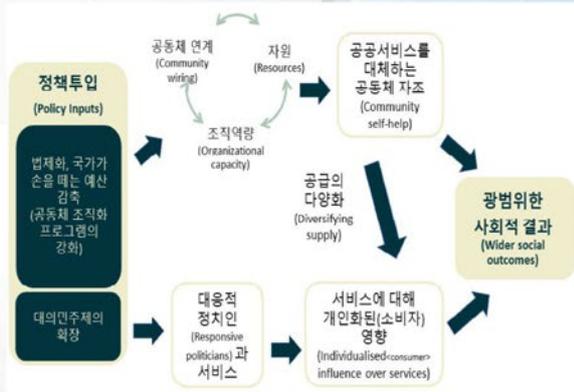
[지역공동체권한위임 이론의 변화]



자료: Rolfe(2016:119)

**Localism act vs
Community empowerment act**

[지역주의/큰 사회 이론의 변화]



자료: Rolfe(2016:121)

59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7) 주민자치회에 행정정적 지원 문제

[핵심 가정 비교]

가정의 중점	지역주의 가정	지역공동체권한위임 가정
권력	국가에서 권력을 이양해야 함	공동체는 자체 권한위임 수준을 선택할 수 있음
국가의 역할	국가가 방해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더 강해짐	공동체 참여(대부분)는 공동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할 때 가장 잘 작동함
공동체의 역할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국가가 방해 받으면 해제될 잠재 능력이 있음	공동체에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지만 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특히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참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전제 조건임

자료: Rolfe(2016:126); 김홍주(2021:74)

60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2. 쟁점사항 검토 및 방향성 모색: 7) 주민자치회에 행재정적 지원 문제

- ✓ 결국, 본 내용은 공동체가 스스로 자조할 때 까지 행정(정부)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임
- ✓ 무엇보다 행정과 주민공동체 조직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61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3. 제언

- ✓ 제안 이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뿐 아니라 대의민주제(지방의회)와 상호 보완적 민주제도로서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임
- ✓ 지방의회는 조례와 관련된 입법, 행정감사 등에 관한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제공해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장의 문제점,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방의회로 전달해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함

62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3. 제언

- ✓ 1. 읍면동 주민모두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 ✓ 주민세 환원=참여예산제, 여기서 주민세는 개인분(세대주), 종업원분, 사업소분(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으로 구성, 주민세가 모두 환원된다고 할 때, 하나의 회비 성격으로 간주
- ✓ 당연히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
- ✓ 2.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 제안
- ✓ 3. 법인 여부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안

63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3. 제언

- ✓ 4.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 주민총회
- ✓ 주민자치회 의사결정 우선순위 도출 및 상정+주민총회 최종의사결정 및 승인
- ✓ 지방의회와 차별화: 대의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해 위임된 권력이 결정하면 따르는 방식, 이에 반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완적인 민주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총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64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3. 제언

- ✓ 5.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 방식
- ✓ 공개모집 및 무작위 추첨을 전제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일부 조례 및 운영세칙에 위임(예시, 공개모집 후 미 충원 된 인력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운영세칙에 위임 등)
- ✓ 6. 일반법 + 개별법 검토, 개별법 검토 시 조례로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형식
- ✓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65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3. 제언

1) 배타성 극복 노력

- ✓ 친밀함은 곧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지고, 높은 사회적 자본은 가끔, '배타성'을 유발
- ✓ 이러한 배타성은 바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 더 나아가 지역의 필요로 이어지면 그 '해결력' 수준이 높아짐. 따라서 다양한 자원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임

2) 공론장의 운영

- ✓ 공론장: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소통을 통해 각자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가장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 **'시민적 덕성'**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임

66

IV. 주민자치 법제화(정책) 방향성 모색

4. 주민자치회 관련 논의 주제들

- ❖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인 조직인가? 행정에서 요청하는 조직인가?
- ❖ 행정에서 지원해야 하는가? 왜 지원해야 하는가? 지원 범위는?
- ❖ 주민자치 활동은 위원들의 봉사활동인가?
- ❖ 주민자치회와 다른 주민조직들과의 관계는?
- ❖ 너무 많은 사업과 활동에 지쳐가는 주민자치회?
- ❖ 사무국에 대한 지원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세종시 주민자치회 간의 도농격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 ❖ 개별 자치위원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열린분과는?
-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 ❖ 각 주민자치회의 경험 및 역량 축적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 ❖ 일반 주민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67

감사합니다.

02

주민자치의 이해 및 기본개념교육

하경환(함께자치연구소 공동대표)





주민 스스로의 통치

‘함께자치연구소 공동대표 **하경환**



주민자치

치맥 가게를 세금으로 운영 한대 가능해?



HOME > 자치행정 > 진안

진안군에 주민주도 통합 돌봄 협동조합 출범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2.06.15 13:22 | 댓글 0

㉸) 돌봄 개발과 활용을 위한 농촌노인의 욕구 조사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노(노노) 돌봄 개발과 활용을 위한 농촌노인의 욕구조사 지원보고서 A
 Study of the Elderly's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lder Care ...

<http://www.asandesk.co.kr/news/articleView> *
 아산, '마을공동체 중심 돌봄조직 육성' 공모 선정 - 아산데스크
 2022. 3. 1. ... 도 관계자는 "공모 선정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조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에 공감..."

<https://www.516n.news/news/articleView> *
 마을 공동체에서 통합 돌봄, 마을이어서 가능한 실시일만
 2022. 5. 17. ... 라디오인에서 5월 가정의 달에 마을공동체 돌봄 사례를 소개한다. ... 중심
 으로 학교 밖에서 학부모들이 대안교육자가 되어 대안교육 공동체를 ...

<https://www.chi.re.kr/main/search/down> * PDF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중년형 돌봄체계 모델 구축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는 크게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도매, 진안시의 고령친화마을 위한 돌봄 공동체 조성...

우리 방학3동 주민자치회 분과 및 분과별 실행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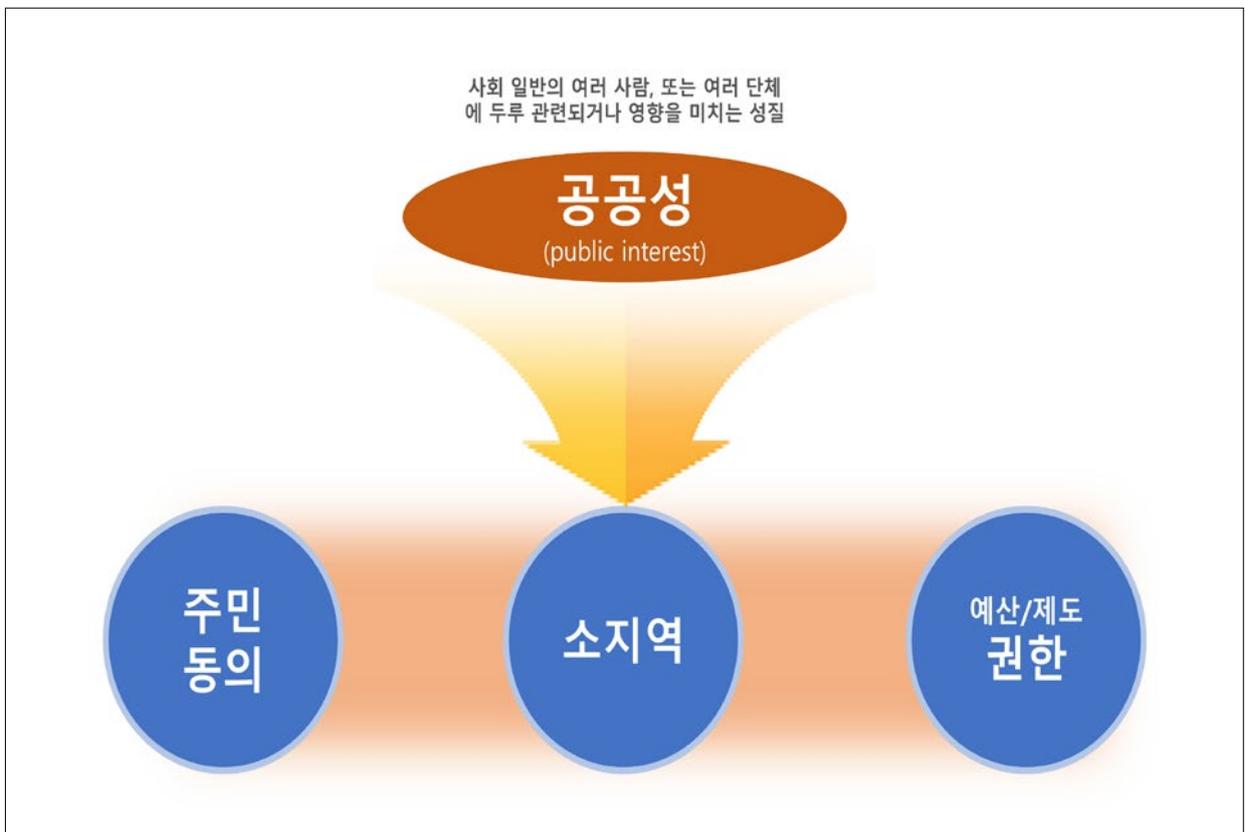
(※ 실행 의제는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됩니다.)

나눔·복지 분과 주민총회 시로 뽑는 복지	시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새가정 발굴 및 작은 소통 동아리 활동 : 시각장애인 있는 통새가정 정서적 지원 ② 통새가정을 위한 집수리 지원 활동 : 자라봉시지를 건강관 통새가정 돌봄 ③ 이혼신 간 관계형성 및 노년과 삶 윤희 활동 :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소통프로그램 운영 구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로와 상가 탐구에 진입 보조장치 설치로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 : 유도차, 휠체어
마을미디어·홍보분과 마을 방송국 운영 및 마을 홍보	시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을 방송국 공간 및 게시판 설치 : 마을 방송국 홍보로 주민참여 활성화 ② 마을 방송국 홍보물 제작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③ 마을 방송 운영 프로그램 진행 : 마을 방송 기동교육 및 방송제작 견학·시어 교육 구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학3동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마을 홍보에 활용
아동·청소년 인권교육분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시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활성화 : 주민센터 지하 공터 운영 ②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센터 내 아동청소년 문화공간을 공동 활용해 : 자갈이배치, 시설보관 등 ② 신동리2단지과 백산이배치 사이 인도 설치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일일통행료로 변경 ③ 국동이배치 뒤 정비 및 다목적 생태교육장 설치
역사문화 예술분과 문화 발굴 및 마을행사 주관	시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 동네 시계열 사진으로 달기 : 마을풍경 기록 및 주민간 소통 ② 우리 동네 재밌있는 구석 찾기 : 가족이 함께 우리 동네 역사문화예술공간 탐방 및 소통 ③ 가족이 행복할 놀이 한마당 : 은행나무 카페 일일맛집 연계한 가족소통 놀이마당 진행 구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날 행사 : 김수영 문학관 - 원당생 공원 사이 차 없는 거리 조성
자연생태 환경분과 환경 보전과 깨끗한 마을 조성	시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에피브 단지 내 친환경 화단 가꾸기 :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간 유대감 형성 ② 골연업 데이(Clean Up Day) :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의 깨끗한 환경 조성 ③ 우리 마을 자연생태 확보 달기 : 수목지도 그리기, 수목에 명찰 달기, 수목해설판 달기 구 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동이배치 지구 환경 개선 : 친환경 직언 화단 조성 ② 원당생 공원 내 화장실 설치 : 원당생 공원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 ③ 우리은행 일 인도록 진입대를 도로폭으로 이동 : 주민의 안전 및 보행권 확보 ④ 신길 보행로를 도로폭으로 근접 변경 설치 : 노약자의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총회 문의 및 참가 접수 : 방학3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2091-5281, 5282)

주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마을
방학3동 주민자치회

- 우리은행 앞 전봇대 이동
- 원당생 공원 내 화장실 설치
- 방과후 돌봄교실 활성화
- 도로, 상가 진입보조장치
- 마을방송국 운영
- 가족놀이 한마당 운영



정의

자기 지역을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

[출처 : 학습용어사전 초등사회]

지방행정을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

[출처 : 다음백과]

잠깐!!

지방자치는 ?

지방행정사무를 지방주민 자신의 책임으로 자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적정
범위

- 일본 시정촌 : 73,340명
- 독일 게마인데 : 6,100명
- 스위스 콰문 : 2,697명
- 스웨덴 콰문 : 32,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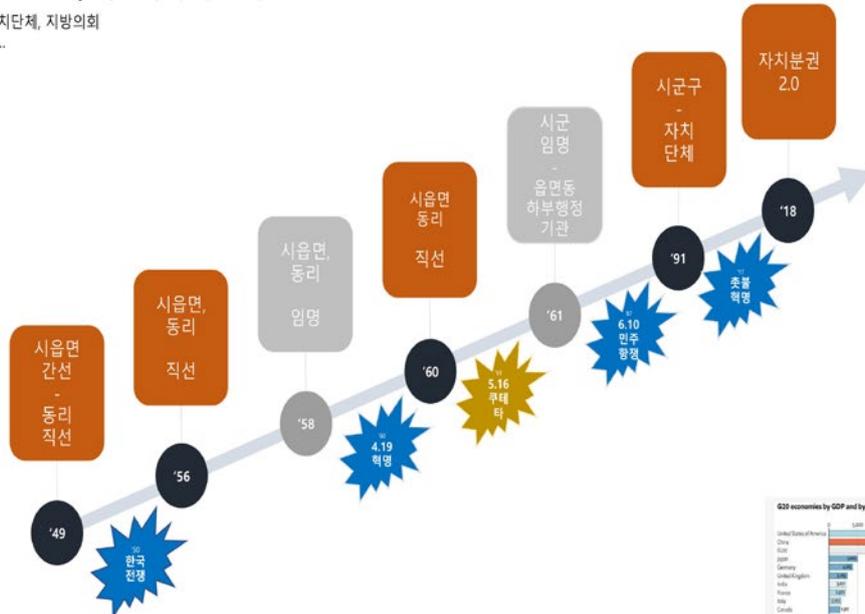
생각해볼 문제

자치
수단

- 선거(단체장, 의원, 교육감)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감사 / 주민조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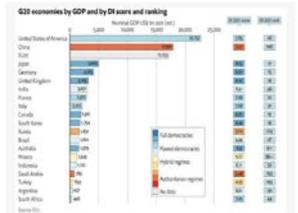
1948년 제헌 헌법, 지방자치 명문화

2개 조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기타 지방자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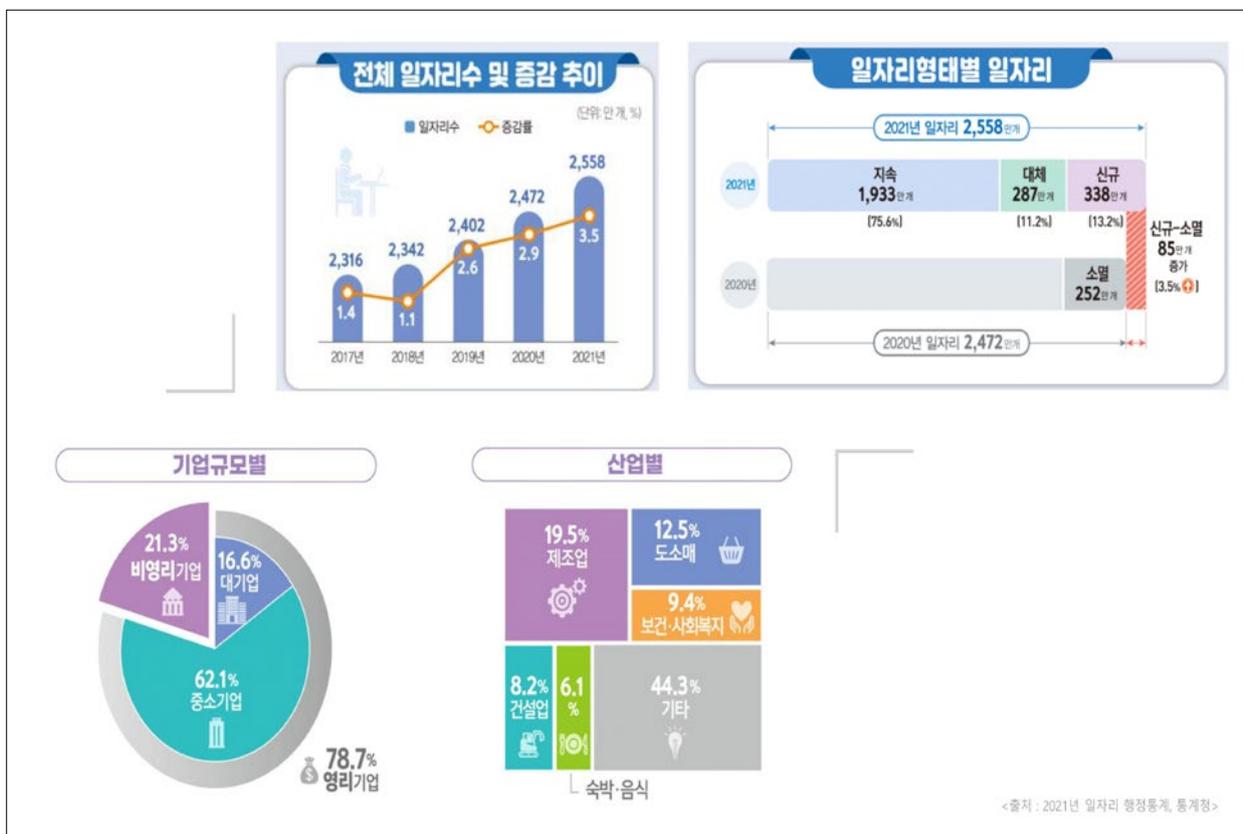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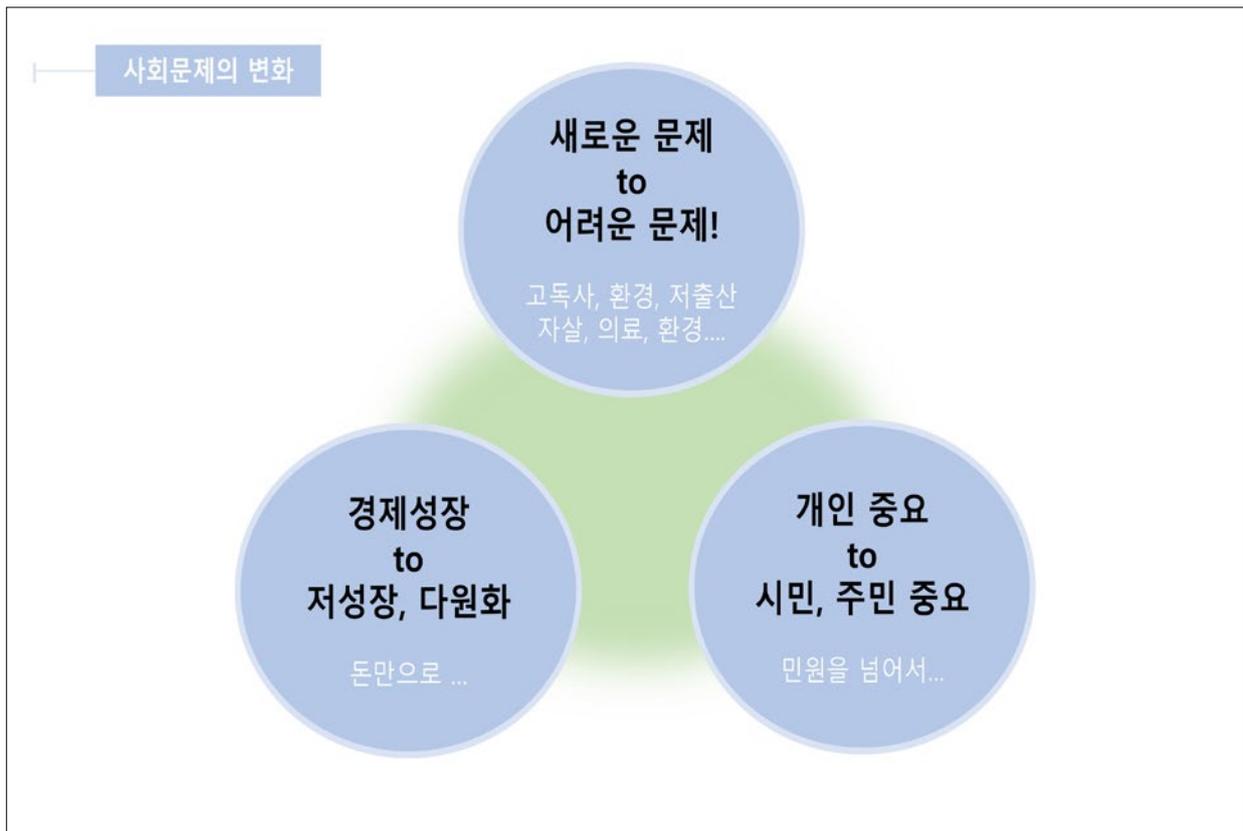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0. 세계 23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1. 세계 16위, GDP 대비 높은 지수



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관료제 패러다임	시장 패러다임	협업 패러다임
핵심 주체	정부	공급자	네트워크
중심 가치	합리성	효율성	신뢰
중심 목적	효과적 정책 수행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 삶의 질 변화
다원적 관계	계층제	경쟁	협력
국가의 역할	통제자	규제자	조정자
자원의 배분 체계	계선조직	시장	네트워크에 기반한 계약
자원의 활용	공공자원 동원	민간기술 활용	공공과 민간 자원 융합
평가 초점	투입	산출	변화
이용자에 대한 인식	대상자	소비자	이해 관계자(참여와 협력)
관심의 초점	제도	조직	관계
학술적 기반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네트워크, 시민사회론)

<출처> 김보영, 2013,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업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계적 변화

-1963. 드골 '중앙집권체제로 더 이상 발전 할 수 없다'

*상원 및 분권 개혁 국민투표 부결

-1982. '자치단체 자유에 관한 법' 제정

*자치단체장(관선)->지방의회장, 사무와 재정 이양

-2003. 지방분권 개헌 완료

*보충성 원칙 조항, 국가조직 분권화 등



-1997.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제도폐지 등

-2006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

*중앙지방 관계 변화(상하->대등), 국가보조금 일부 폐지, 도도부 현에서 시정촌으로의 권한 이양

-1993. 제73차 헌법 개정

*촌락-면-군 3단계 자치체계 확립, 지정카스트 및 여성 의원 비율 1/3 할당, 5천명 의원 → 300만명 의원으로 변환

-1835. 도시법인법 제정

*178개의 주민선출형 지방자치단체 설립

-2000. 지방정부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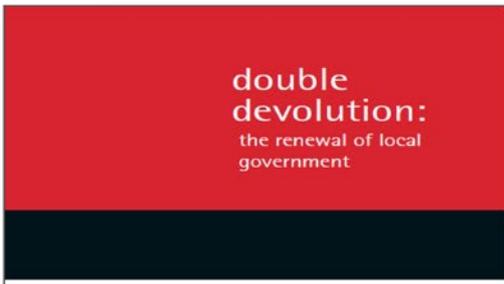
-2011. 지역주권법 제정

*경제, 복지, 환경 정책 권한 지방부여, 주민의 근린계획 우선권, 공동체입찰우선권, 공공서비스도전권 등 부여, 지역 경찰서장 선출, 학교운영권을 커뮤니티로 권한 이양

영국 사례



작은 정부와 큰 시민사회를 모토로 영국의 캐머론 (Cameron, D.) 신임보수당 연립정부가 내세운 슬로건, 커뮤니티 및 관련 단체와 조직에 더 큰 권한을 **이양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커뮤니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이양한다.**



Edited by Geoff Mulgan and Fran Bury of the Young Foundation



Localism Act 2011

지역주권법(영국)

관련사항 행동축	목표	법안 내용	상세설명
관료주의 타파	불필요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없애고 지역에 독립 예산과 권한을 이양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청 장 지역 법인 제정, 지방세 부과 및 평가 항목 폐지	신노출당 정부에서 주도했던 지역발전 전략 기관(지역개발공사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폐지,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합의보장인 내용과 별거하는 지역 종합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폐지
공동체 주도하는 지역사회 미래 영향 및 실행	공동체의 역할을 저하시킬 지역 주도적 사업 진행을 위한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권한	일반적 권한 (General Power of Competence) 지역공동체 입찰 권한(Co-munity right to buy)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계획 (Neighborhood Plans)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계획 (Community right to buy) 지역공동체 활용지 사용 신청권 (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지역공동체 자산개발권 (Community right to build)	지방정부의 합의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금지사항 이외에는 지방정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사회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평가되는 건물, 호텔, 도서관, 체육센터, 문화관 등 지역 자산의 매각계획이 있을 때, 지방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의 스스로그 자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개발 계획을 승인하여 지역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 부여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류 배치를 지역 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지역공동체에 지역공동체를 위한 개발 사업 수월 권한 부여, 지역공동체가 원하는 사업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규제를 풀어 입찰적인 허가 과정보다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이 지역공동체 가능한 지역 공공 서비스의 확대	지방정부의 예산 중 지방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율은 30%에 불과 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세수권 확보	지방세 주민투표 가점 투표제 도입 지역 개발사업 주민투표	지역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며, 이를 폐지하는 예산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과중한 지방세 인상을 제어 지역 내 존재하는 지역기업의 자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 개발 사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공동체가 지역 공공 서비스를 위한 투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비율을 지방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권한 부여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과 모델이 다양화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직접적인 민간 서비스 및 자금을 제공 허용, 특히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자가 소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공동체 입찰 권한(Co-munity right to buy) 지역공동체 도전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공동체 지역기업이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을 발견하고, 민간 기업이 소유하여 직접 지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공동체 공공체, 지역 기업이 기존에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방 내 주민이 입찰을 위한 정부 운영 공개	주민의 지역 민선 기관의 직접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개 참여	지역 주민투표	지방정부와 지역의 공공기관의 £500 이상 자금을 내달려 공개 입찰, 지역 공공기관의 공무형 영입 내달려 공개 의무화
지역 정책 개발 및 수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는 제도 확보	공공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되고 직접 감사(inspection) 대상인 서비스 이용자 및 계약자를 명확히 할 것, 계약자 직접 참여, 지역 참여자를 참여시키고, 입찰하는 제도 확보	지역 주민투표 선출직 단체장 가점	주민투표로 지역 이슈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영관등 내 30개에 도시 시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권한 부여 지역 주민투표 통해 지역 경쟁력 향상 선출하는 권한 부여, 지역사회 예산(Community Budget) 프로그램과 같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권한 부여

<출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엮은 2017-10호>

지역공동체 근린계획권

지역공동체 입찰권

지역공동체 공공서비스 도전권

지역공동체 자산개발권

지방세 투표권

주민자치 회(會)

읍면동 주민의 자치 활성화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28조, 29조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읍면동 주민의 공적 기능 강화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시범사업운영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읍면동 주민의 공적 기능 강화

읍면동 주민의 자치 활성화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시범사업운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주민자치회법』 제14조(시범실시지역의 결정·확정)에 따라, 2015년 12월 24일 제정된 주민자치회법 제29조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자치회법 시행령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규칙·규정의 제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1단계
(2015. 12. ~ 2017. 12.)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

2단계
(2018. 10. ~ 2019. 9.)

18개 읍면동 추가, 총 49개소 읍면동에서 실시

3단계
(2020. 7. ~ 현재)

17년 12월 453개, 19년 6월 214개, 20년 8월 626개, 21년 6월 777개 읍면동에서 실시

☞ 1·2단계와 3단계 비교

구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2단계 ('13.7월~'17.6월)	3단계 ('17.7월~현재)
주민자치회의 권한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의 수행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의 수행, 운영내역 보고,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 주민회비 계획
주민자치회의 기능	1. 주민회 운영가능 중 주민생활 밀접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2. 주민회 운영가능 중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하는 것에 비유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및 순수 주민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1. 주민생활 계획, 자치 계획 수립, 집행추진, 운영내역 보고 등 순수 주민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주민회 운영가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 3.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중 주민자치회등의 운영 등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의 기관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회(1년 1회 7인)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회(1년 1회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선정	없음	분과위원 및 사무국 설치
위원선정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위원공개모집과 추천 (주민자치회법 제21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 위촉(행정안전부)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위원공개모집 방식 → 주민자치교육이수(시·군·구·자치) → 공채추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시·군·구·자치)
공무원 파견	없음	주민자치분야 컨설팅역, 전문지원 또는 행정지원 파견
읍면동장의 의견제출권	있음	있음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포그래픽스(2021), 함께 알아보는 주민자치회

공공성 강화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 추천제 모집(사전교육)
-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활용
- 위탁사무 가능
- 자치단체장 위촉
- 분과위원회 개방
- 주민자치전담인력
- 전문지원기관

현황

- **시범사업 확산**
- 읍면동-1,302개(37%), 지자체-103개(45%) **21.6배 증가**

단위: 읍면동 개수

연도	읍면동 개수
'13	31
'15	47
'18	95
'19	408
'20	627
'22	1,302

- **3단계 중점사항 현황** <2020.12. 기준, 자치법규 조항 기준>
- 위원 대표성 - **추첨제 도입 86%**(115개 지자체)
- 운영 민주성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94%**(126개 읍면동)
- 기능 공공성 - **주민세 연계 24%**(15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연계 33%**(206개 읍면동)

- **자치단체의 혁신적 시도**
- 위원 무작위추첨, 특별회계, 민원수수료 재원 활용, 행정차량 업무협약, 임기제 공무원 활용, 조례제정 활동, 사업실행 연계 법인, 중앙부처 사업 연계 등

변화

- **위원 다양성**(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증가

여성비율

38.6%

주민자치위원회

➔

49.6%

주민자치회

11%

40대이하

11.8%

주민자치위원회

➔

19%

주민자치회

7.2%

직장인

8.9%

주민자치위원회

➔

12.8%

주민자치회

3.9%

- **인지적 변화** (2017년 대비 2020년, 출처 :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회 실태 분석 및 성과평가 연구')
- > 긍정 : 생활환경개선 향상 ↑ 28%, 마을공동체활동증가 ↑ 22%,
행정과의 소통 ↑ 19%, 주민과의 소통 ↑ 14%
- > 부정 : 프로그램 강좌 ↓ 3.9%, 마을의 안전 ↓ 1.8%

위원회와 회의 차이

읍면동장 자문기구 vs 주민 협치 실행기구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 주민자치협의·실행기구
법적근거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명안부 승인)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지문	-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 지방정부 위임·위탁 사무 수행
위원구성	-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선정·접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또는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공개추첨으로 선정 ※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위촉권자	- 읍면동장	- 시장·군수
재정	- 읍면동 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 현정	- 자체 재원인 사업(위탁)수익, 보조금 등으로 운영
지명정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알기쉬운 자치분권>



공공성 (public interest)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





진짜 주민자치가 시작됐다
- 달콤쌉쌀한 주민총회 도전기
(2020. 10.22)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8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치단체 중심의 주민자치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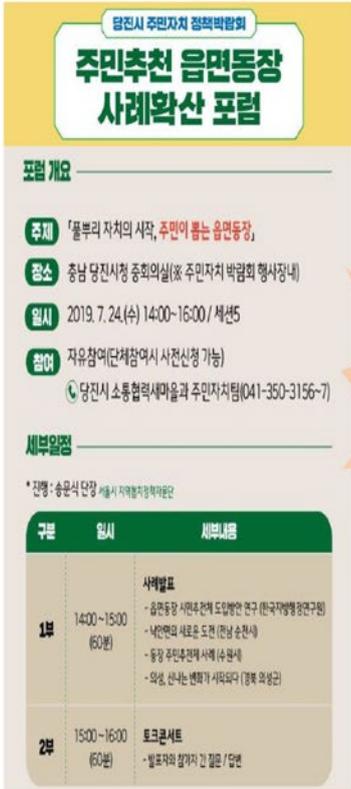
문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 (마을자치 활성화) '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주민추천 읍면동장 사례확산 포럼

포럼 개요

- 주제** '풀뿌리 자치의 시작, 주민이 뽑는 읍면동장'
- 장소** 충남 당진시청 중회의실(충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장내)
- 일시** 2019. 7. 24(수) 14:00~16:00 / 세션5
- 참여** 자유참여(단체참여시 사전신청 가능)
당진시 소통협력사무실과 주민자치팀(041-350-3156~7)

세부일정

* 진행 : 송문식 단장 (세시 지역행정지원단)

구분	일시	세부내용
1부	14:00~15:00 (60분)	사례발표 - 읍면동장 사면후 견학 도입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안면의 새로운 도전 (전남 순천시) - 동강 주민부천제 사례(4월세) - 위장, 산사는 변화가 시작된다(경북 곡성군)
2부	15:00~16:00 (60분)	토론회 - 발표자의 질의응답 / 질문



읍면동 리더십 변화

14개 자치단체, 61개 읍면동(21.6 기준)



동장공모직위 인센티브

- 우리 마을의 행정직원이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

행동동장 보좌 토론회 및 주민행동동장 공모

■ 필수 보직기간 : 2년

■ 인센티브 부여

- 승진우대 : 2년 이상 사무관 + 2년 동장 근무시 → 4급 승진 우대
- 근방우대(살림가정 부여), 성과연봉(성과연봉 책정시 가점 부여), 상향연보(본청)
- 인재추천권(예당동에 적합한 인력 지원) : 6급 팀장 1명, 7급 1명
- 예산지원(주민행동사업에, 구정장프론트사업, 그외 시장의 특별사업) : 1억 이상

8. 개방형직위(민간전문가) 도입

자치분권 기반마련을 위한 주민참여형 심사

사전 설명회 • 시민사정계획수립 • 시민사정 계획심의 • 모집공고
선발시험위원회구성 • 선발시험시험(서류 • 면접 • 주민참여형 주민심사)
합동후보자 추천 집중

간담회 및
사업장 방문

주민대표
간담회

주민심사

내용: 2018. 10. 23. 주민자치 학교 1차 교육 자료 14쪽

“정부의 장밋빛 선전과 뽀빠야뜨 라즈(마을의회)의 현실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일부 주를 제외하면, 뽀빠야뜨 라즈(마을의회)는 농촌개혁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람 사바(주민총회)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마을의 특정 집단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뽀빠야뜨 의원을 뽑는 선거는 카스트나 가족주의 등 전통적 정실관계의 영향력 밑에 있다”

<출처: 2008. 포스코경영연구소, 고흥근-인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뽀빠야뜨 체계 서문 中 >

- 제73차 개헌의 대표적 수사 “의원수가 5,000명 --> 300만명으로 전환”
- panchayat : 5인 panch + 회의 ayact, gramsabha : 마을 gram + 의회 sabha(웃 중생들의 번뇌가 녹아내린 곳), 뽀빠야뜨=마을의회, 그람사바=주민총회 정도로 해석됨.
- 뽀빠야뜨는 헌법상 주 정부의 기능 중 29개분야(인사권, 조세권 등 포함) 이양 받을 수 있음
- 그람사바는 뽀빠야뜨의 기능 안에서 역할 담당
- 역할 : 예산과 결산보고서 심사, 과세안 심의, 예산안 심의, 행정 관련 보고서 논의, 기존계획과 활동 검토, 뽀빠야뜨 활동 검사, 마을 계획의 승인, 지역계획의 선정, 수혜자 확인 및 선정, 가정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 사회적 화합 촉진 등

제도와 실천 그리고 문화역량의 총체적인 변화, 그 시작이 '주민자치회'

03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마을의제발굴과 마을계획 수립

이도화(주민자치교육전문강사)



주민자치회 운영 및 마을의제 발굴

이 도 화

주민자치교육강사, 퍼실리테이터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2. 분과구성과 운영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캐릭터 출처: 대덕구청 홈페이지

인사 나누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캐릭터 출처: 대덕구청 홈페이지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주민자치회

정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법적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조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출처: 22년 대덕구주민자치학교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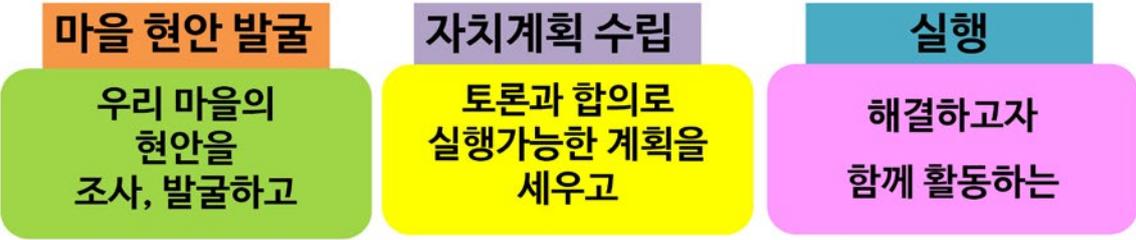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골목과 마을에서
나와 우리의 공통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말을 걸고, 의논하고, 밥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동하고 활동하는 일

이를 통해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위원은
그 소중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중물이자 조력자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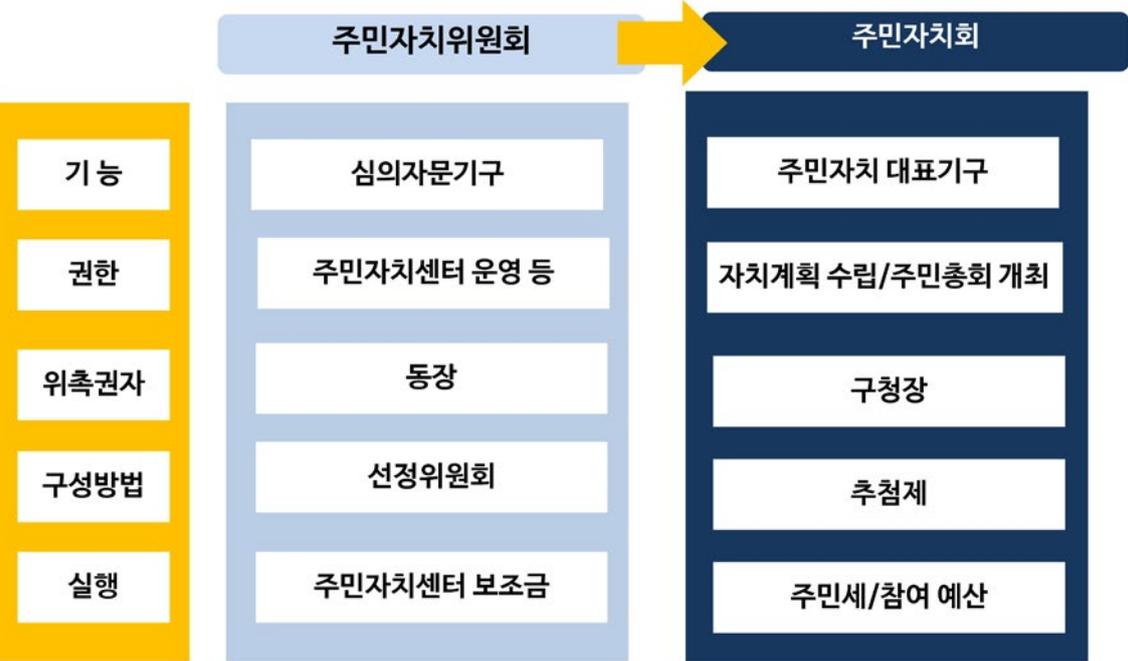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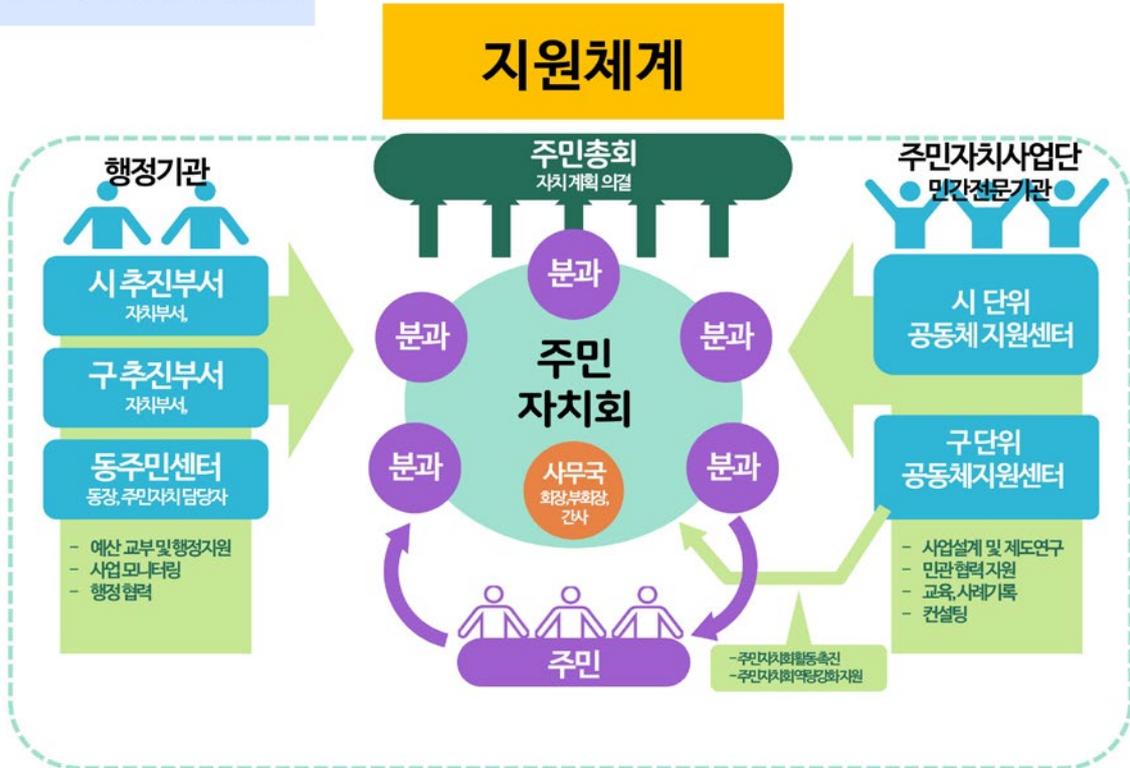


우리 지역(읍면동)의 주민 대표 조직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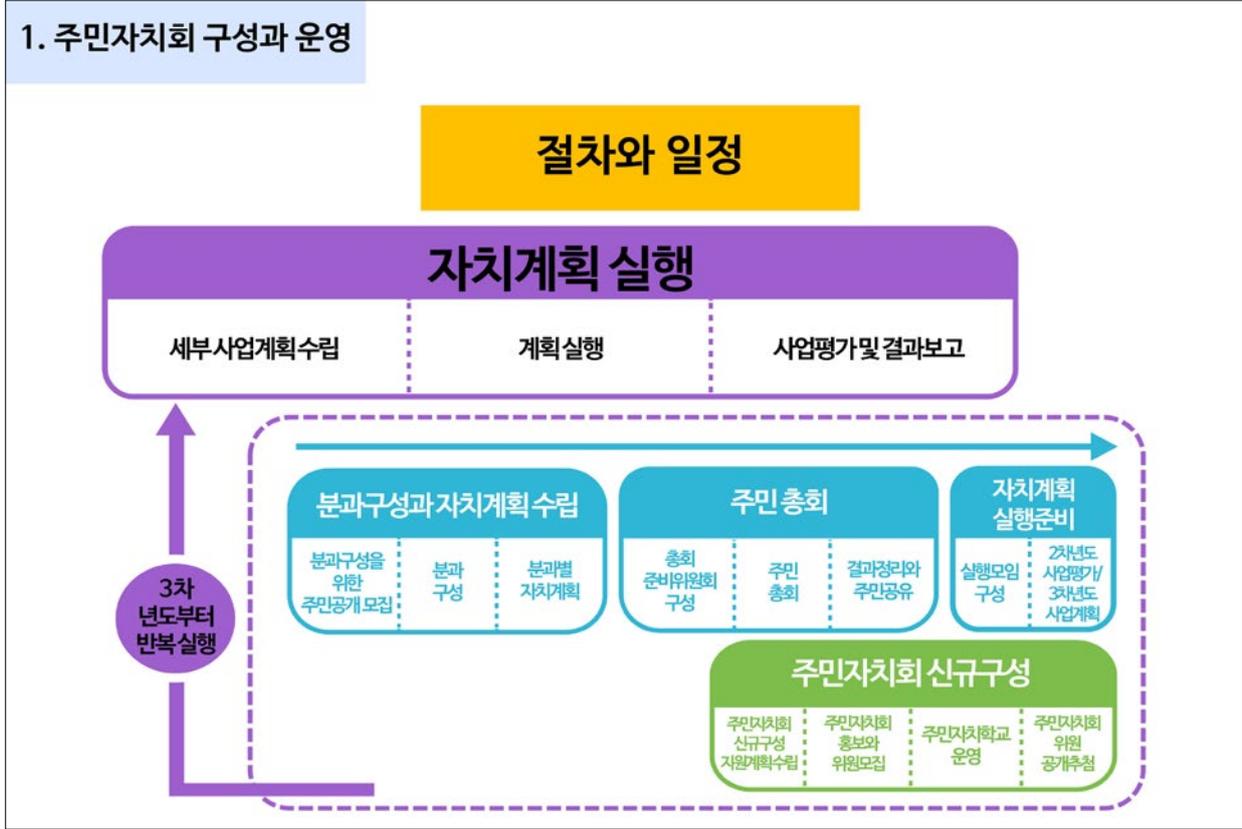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위원 모집

주민자치회 홍보 및 위원 모집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변화와 중요성을 알고, 참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집함

다양한 홍보방법

- 찾아가는 설명회, 작은 설명회 등 주민 맞춤형 설명회 진행
- 동 행정, 주민자치회 등 협력 홍보
- 사례: 청소년과 함께하는 거리 홍보, 주민자치회 설명책자 제작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주민자치학교

주민 자치 학교 운영

- 주민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 주민자치회의 변화와 구체적 권한,
-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함
- 주민자치학교 사전 6시간,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2023 대덕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모집기간 2023. 3. 27. ~ 4. 14. (금)

*주민자치학교 필수 교육 6시간 이수

교육기간	4월 17일(월) ~ 4월 22일(토)	
교육내용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의 방향	김 흥 주 대전대중연구원 연구개발역사
4.17.(월)	주민자치의 이해 및 기본개념교육	하 경 환 충청연구원 3차 운영대표
4.18.(화)	주민자치회 위원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기술	조 재 학 충청연구원 대표
4.19.(수)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마을의제발굴과 마을계획 수립	이 도 화 주민자치교육진흥원 이사
4.20.(목)	속의공론장 주민총회 개최와 실행사업	지 혜 연 충청연구원 3차 이사장
4.21.(금)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마을의제발굴까지	이 도 화 주민자치교육진흥원 이사
4.22.(토)	주민자치회 위원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기술	조 재 학 충청연구원 대표
4.22.(토)	주민자치회 위원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기술	조 재 학 충청연구원 대표

접수방법 동센터 및 자치회 방문접수

오정동	042-608-4622	법1동	042-608-4742
대회동	042-608-4641	법2동	042-608-4771~2
회덕동	042-608-4661	신민동	042-608-5795, 4781
중리동	042-608-4721~2	석봉동	042-608-4802
송촌동	042-608-4719	덕암동	042-608-5836
비례동	042-608-4682	옥상동	042-608-4841~2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위원 공개 추첨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



사진출처: NAVER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운영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단계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구성된 후 주민자치회의 변화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

실행 원칙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정하기
- 임원선출 회의체계
- 동단위 민-관 협력체계 세우기

주민자치회 운영내규 워크숍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임원 선출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운영계획 수립

항 목	운영 내규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자치회의 방향 및 존재의 목적 등을 명시 • 주민자치회의 인원, 자격, 위촉 등을 명시 • 주민자치회의 주요사업 명시
주민자치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정기회의,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회의체계 • 회의체계 별 의사결정 내용 및 위임사항, 회의 정족수 및 의결조건 • 임원의 구성, 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 임원의 주요역할 • 주민자치회 필수이수 교육 등 명시 •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해촉 절차와 승인 단위 명시. 특히 귀책 사유로 인한 해촉 기준 마련하여 명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자치회의 주요역할, 주요역량, 의무 등을 명시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구성 여부 • 분과 구성 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 포함 여부 • 분과의 역할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임원 선출

임원 선출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임원 구성



회장

대내·외적 주민자치회 대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소집
정기회의, 임원회의 주재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 사무감독 및 책임



부회장

회장 공식시 회장권한 대행

회장의 업무협조 진행



간사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무와 총괄



분과장

분과의 대표
분과 정기회의 소집
분과 운영 총괄



감사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 검사

1.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회의 체계

*주민자치회 별 상이

주민자치회 회의 체계 및 종류



2. 분과구성과 운영

캐릭터 출처: 대덕구청 홈페이지



2. 분과구성과 운영

분과원 모집

분과 홍보 및 공개모집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행복한 마을살이~
방학2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방학2동 주민자치회 회장입니다. 방학2동 주민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세움터 출범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오신 주민자치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5일 현재 주민자치회 회원의 총계는, 주민자치회 운영, 봉사활동 등의 주요 직 할사를 거쳐서 2017년 11월 30일 주민자치회 회원 비정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인, 운영에 관한, 운영을 위한, 운영을 위한주요를 지향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의 분과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을살이에 함께 할 주민 여러분들께 서울형 주민자치회 분과 소개를 말씀드립니다. 방학2동 주민자치회는 영문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과 운영의 사치를 추구하는 비전은 주민 대표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보편과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15일

사례1(도봉구 방학2동)
주민자치회장, 동주민센터동장외편지를 실은 홍보물

활동은 우리가 스스로 권한은 더 많은 주민과
시흥2동 주민자치회

“주민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리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2017년, 시흥2동 주민이거나 시흥2동에서 활동한다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리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주민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리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
주민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리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절차
주민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리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사례2(금천구 시흥2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과 절차를 소개한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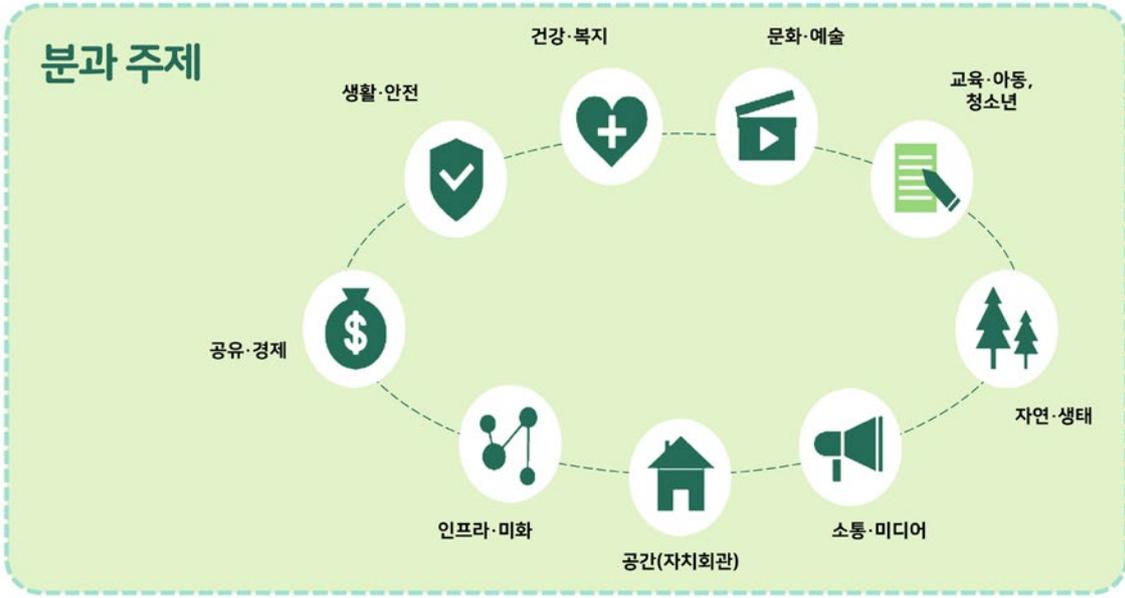
2. 분과구성과 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분과구성과 운영

분과 구성: 주제별, 사업별 등



가족 성장 창5동 주민자치회 가족성장분과
아빠들이 만드는 활기차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 ▶ 가족성장 플러스를 위한 아바 교육
-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 ▶ 가족과 함께 하는 동네플러스 활동

건강 복지 창5동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나눔활동으로 정감넘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케찹김치 및 따뜻한 나눔활동
- ▶ 정서적 관계가 필요한 이웃들과 동네 나눔이

경제 문화 창5동 주민자치회 경제문화분과
사회적 가치를 소중하게 가꾸는 마을 만들기

- ▶ 사회적경제 스토리 탐방
- ▶ 창5동 다있어 테마축제

교육 돌봄 창5동 주민자치회 교육돌봄분과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 만들기

- ▶ 시료를 알아가는 대화집, 푸드아트
- ▶ 건강한 나를 만드는 일러스트, 에-이그림 코칭



2. 분과구성과 운영

▶ 분과 운영의 핵심 ◀

1. 분과 운영의 독립성/ 분과활동 계획서

2. 주민 누구나 참여/ 연계성

3. 일상적 주민 만남과 의제 발굴

2. 분과구성과 운영

분과구성과 마을계획 수립

분과구성과 자치계획 수립단계는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분과를 구성하여 동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 자치계획으로 수립하는 단계

실행 원칙

- 자발적 참여
- 민주적 운영
- 결정권 확대

분과는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수렴하고 민주적 논의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위. 주민자치회는 분과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



2. 분과구성과 운영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마을계획

1.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할 활동 계획서
2. 주민들과 함께 동 단위 문제를 찾아 해결 과제를 결정하고,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3. 공론의 장을 통해 발굴된 문제를 실행하기 위한 종합 사업 계획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결정할 내용

1. 단발성 사업 : 가로등 설치, 시설 개보수 등
욕구가 한번 해결되면 당분간 사라지는 사업
2. 연속적 사업: 문화교실 개설, 동아리 운영, 동네축제개최, 김밥집 창업 등
욕구 해결을 위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3. 동 비전: 생태중심동네, 에너지자립동네 등 동의 장기 컨셉에 대한 결정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마을계획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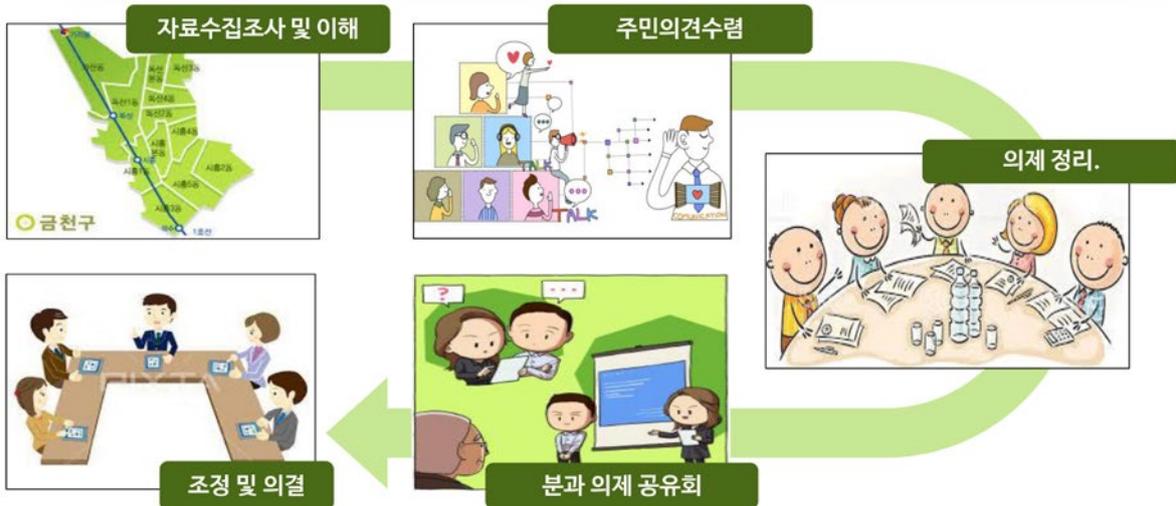
1. 자치회관 운영 계획: 모집홍보, 만족도 욕구조사, 프로그램운영 원칙
2. 마을의제 수립: 총회에 상정할 계획
3.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계획(조직운영, 예산 등)
4. 분과 운영계획 : 분과 연간 운영계획(목적 목표 조직방안 등)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마을계획 수립과정

마을계획 수립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 의제를 조사, 발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자치계획 수립 절차

1.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마을사업전문가와 협력)

*문헌 및 자료 수집

- 행정협조, 구청홈페이지 등으로 통계자료 수집
- 동 단위 단체현황, 민원사항정리, 지치센터 운영현황 등 정리
- 마을역사, 자연환경, 인문자료
- 분과원별 수집 분야 배분 후 수집 후 공유 회의 진행

*인터뷰 및 방문조사 또는 탐방

- 마을 전설, 이야기 수집 시 토착민 인터뷰
- 문화재 및 유적지 조사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자치계획 수립 절차

2. 자료분석 및 마을이해

*자료분석 방법

- 인구통계 자료: 인구 연령별, 세대별, 성별 등 구분하여 분석
- 단체기관조사 자료: 단체성격, 주요업무, 임원구성, 회원 수, 최근사업현황 등
- 마을역사, 자연환경: 시대별, 계절별, 전설이야기 녹취, 사진자료 정리

*분석자료 활용 사례

- 인구 분석으로 어린이프로그램, 건강 및 복지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 배치
- 역사 전설 자연환경 조사로 우리마을 해설사 양성, 마을학교 학습자료 활용
- 마을 만들기 소재: 둘레길 조성,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자치계획 수립 절차

3. 주민의견 수렴 활동 (분과별 역할 분담)

-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 주민 프로그램 개설 욕구 조사
- 경로당, 복지시설, 도서관 이용자 및 학부모 방문 인터뷰
- 수다회 개최, 민원 관계자 초청
- 우리동네 꿈 그리기 대회
- 동네 자랑 및 칭찬 수기 공모: 카톡 밴드 등으로 접수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자치계획 수립 절차

4. 분과의 의제 정리 및 당사자 조사

*의제 정리

- 자료분석 결과, 사생대회, 자랑 수기 공모 등 확보 된 자료 목록 만들기
- 목록 확인 및 분과별 담당 의제 분류회 (분과장, 간사, 임원진 참여)
- 분류된 의제 확인 작업 및 분과회의 개최(분과의제 확정)
- 상황에 맞게 전문가 행정 등과 토의 및 검토

*당사자 조사 및 갈등 분석 예시

- 통학로 교통안전이 해결 과제일 경우 위험한 도로로 등교하는 학생, 학부모, 통학로 이용 운전자 등이 당사자임.
- 당사자 목록에 따라 분과원은 역할 분담해서 사실 관계 조사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자치계획 수립 절차

5. 의제 공유회 개최

*공유회 개최 개요

- 주민자치회, 행정, 주민의 공유의 장
- 분과별 의제 발표회, 참석자 의제 우선순위투표, 우선순위 의제 선정
- 분과별 결정된 의제를 사업계획으로 완성(예산 계획 포함)

*검토사항

- 의제별 법률 및 행정의 검토 및 점검
- 지속의제 설정 및 신규의제 발굴
- 예산 배분 및 실행 당사자 확보 방법

3. 의제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이미지 출처: 네이버

자립

- 어르신 밑반찬 교실
- 노년기 질환예방 프로그램
- 시니어취미교실

안전

- 우리동네 골목안전 살피미 운영
- 안전하고 재미있는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 어둡고 위험한 골목 환경개선

돌봄

- 이웃이 되는 "찾아가는 행복밥상"
-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 재능기부 봉사단 결성
- 이불세탁 집수리 지원

3. 마을 의제 발굴



이미지 출처: 네이버

기후 변화

- 미세먼지 게시판 설치
- 기후행동 학교운영
- 에너지체험교육, 에너지 진단사 양성
- 환경 다큐멘터리 상영
- 마을 에너지 축제

생활 환경

- 마을거점 빈병회수기, 분리 수거함 설치
- 동네청소 하는 날
- 우리동네 배수구 악취차단기 설치

자치계획서 살펴보기

인간협치를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다

안심마을 행복동네
송죽동

캐릭터 출처: 대덕구청 홈페이지

고맙습니다~~~



04

주민자치회 위원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기술

조재학(함께이룸 대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 기술

함께이룸
지역리더십센터
조 재 학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누가 추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파치족들이 후임 추장을 뽑게 됐다.
3명을 최종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갔다.

추장은 세 사람에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했다.
세 사람은 하루가 걸려서야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 갔다 온 증거로 돌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사람은 풀을 뽑아 왔다.
세 번째 사람은 맨 손으로 달려왔다.

추장이 그에게 왜 맨 손으로 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장님! 우리 부족은 빨리 저 산 너머 동네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서 살펴보니,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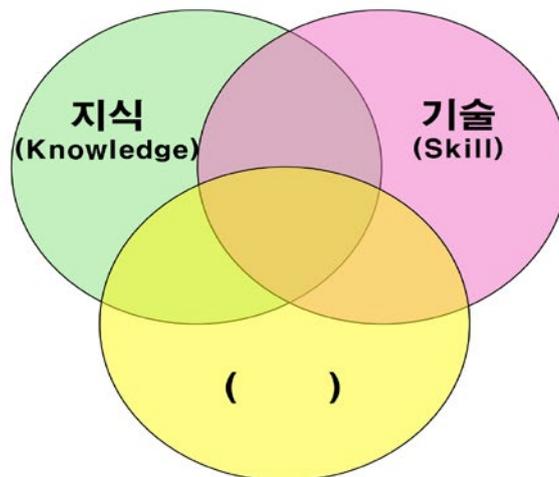
누가 추장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추장이 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추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리더에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다.

()의 이익

역량(competency)이란



CONTENTS

-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리더십
- 2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회의진행법
- 3 모두의 주민자치를 위하여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리더십



주민자치회

떠오르는 생각을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리더십

조직(사회)가 추구하는 목적(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협력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

리더십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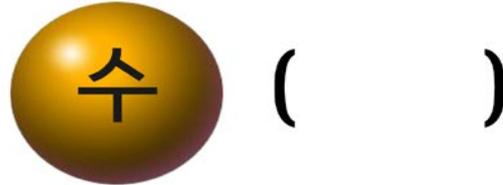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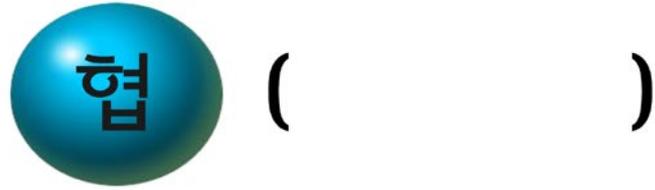
목적
(비전)

()



주민자치회의 기능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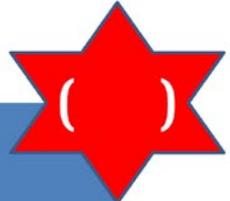


-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산동네.
- 행정에서는 평지나 비탈진 곳이나 똑같은 보도블럭 설치 계획.
-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보도블럭 샘플 설치.
-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주민들은 동네 특성 (경사가 심하고, 어르신이 많이 거주)을 반영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보도블럭 설치 희망.
- 주민들이 선택한 보도블럭은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
- 예산절감과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효과.

주민자치회의 성격 (이중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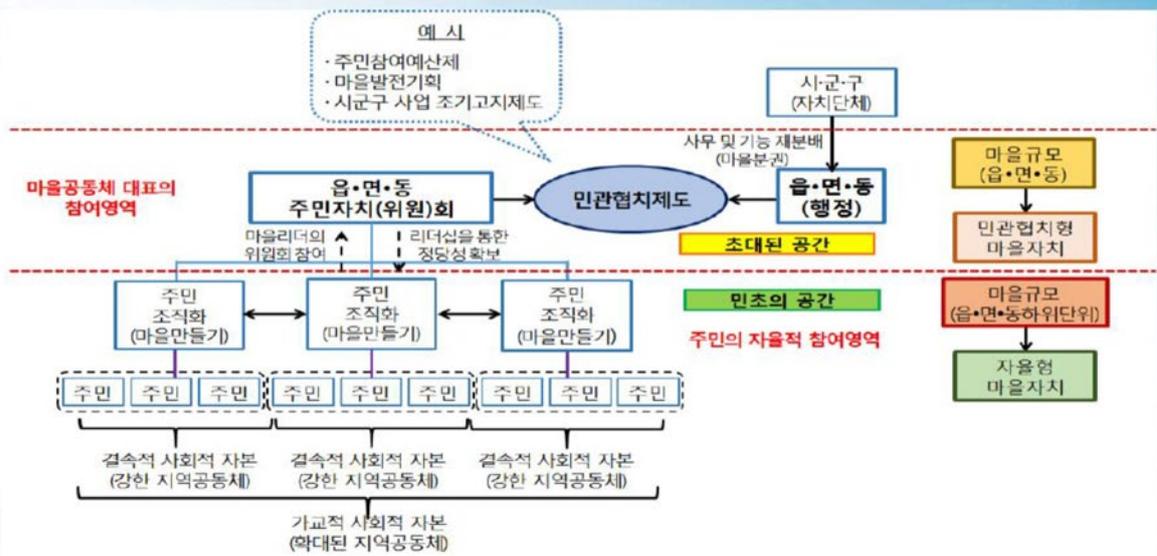
주민 스스로
자치

행정(동.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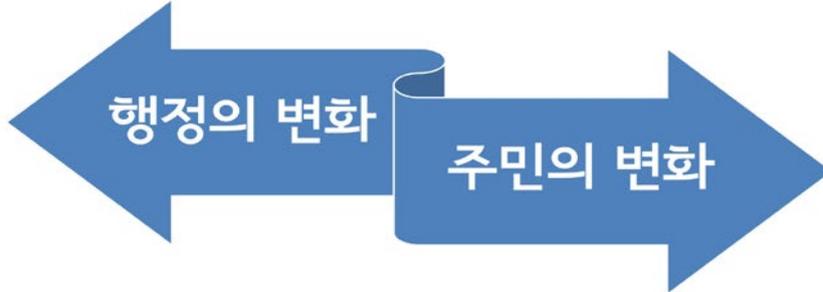
초대된 공간 : 민관협치제도로서의 주민자치회

▶▶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그림 6>



자료: 곽현근(2017: 22)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의 변화



행정의 변화

- ✔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적 지원**
- ✔ **민관협치행정으로의 전환** : 권한 위임과 행정 혁신

주민의 변화

- ✔ 주민자치는 행정 보조활동이 아닌 **주민권의 활동**으로 인식
- ✔ 주민자치회는 모든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대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트(Boat Racing) Vs. 래프팅(Rafting)



보트 레이싱과 래프팅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주세요

A large dashed-line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answers to the question about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boat racing and rafting.



리더십에 대한 대표적 오해

-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다.
-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그 기술을 갖고 있다.
-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 리더는 통제하고, 방향을 잡고, 조직을 맘대로 움직인다.
- 리더는 한 조직의 우두머리로 있다.

시대가 변하면 리더십도 변한다!

지도자



- ▷ () 행사
- ▷ 경쟁 지상주의
- ▷ () 중시



촉진자



- ▷ () 위임, 팀 워크
- ▷ 협력
- ▷ () 중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임실 치즈마을'

임실 치즈마을의 주민자치의 역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실성 당으로 부임한 지정환 신부는 "산에는 있어야 할 나무는 없고 풀밖에 없었으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많더라"며 마을의 척박한 현실을 말하면서도 "풀이 있으니 양은 키울 수 있고,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며 마을 주민들과 한국 최초의 치즈를 1967년에 만들었다. 먹고 살길이 막막했던 마을 주민들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1969년 임실역전교회에 부임한 심상봉 목사는 신용협동조합을 조직 했고, 마을 주민들의 교육에 힘쓰며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은 계란 꾸러미와 쌀 등으로 출자를 하기도 했는데, 자조 와 자립과 협동을 실천하는 신용협동조합운동은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다. 당 시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는 밤이면 점방에 모여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겨울 의 농한기에는 대낮부터 술과 노름판을 벌이곤 했다. 심 목사는 그런 주민들을 밤마다 공부방으로 끌어 모아 책으로 공부를 시켰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데 반발한 주민들은 "목사님은 낮에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괜찮 으시겠지만 우리는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심 목사는 낮에 일터로 나와 함께 농사를 짓고 밤이면 공부모임을 조직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까막눈 같던 그들의 눈이 뜨이고,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며 마을교육 공동체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갔다

마을 주민들은 1983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1987년에 '예가원공동 체'를 출범시켰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1989년 '바른농사실천농민회'를 조 직하여 땅으로부터 빼앗은 만큼 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유기농업의 참뜻이라 는 정신에 기초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전주 등의 200 여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당시 소비자들의 의식의 벽에 부딪혀 경영적자를 안고 2003년 해산하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진로와 방향을 모색하던 마을 사람들은 예가원영농조합을 만들어 친환경 경 농업의 본격적 실천에 몰입하였으나, 경영 능력의 부족과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눈을 팔아 적자경영을 해소하는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겪었다. 이런 일련의 실패 과정은 마을 주민들의 무력감 내지 패배감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2002년 12월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 협중앙회 팜스테이 마을에 선정되며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갔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만의 색깔이 자원이다", "사람이 자원이다"는 생각으로 본격 적인 마을만들기에 돌입하였다. 임실 치즈마을은 그 전 해인 2001년에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청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심사를 위해 마을 현장을 방문 한 심사위원들로부터 "별다른 자원도 없는 마을인데 무슨 체험마을을 하겠다 는 것이냐"는 힐난을 받았다고 한다. 2002년에는 심사위원들이 마을을 방문 하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며 사람이 자원임을 역설했고, 그 결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학습 과 실천을 반복하는 지속적인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비록 무수한 실패를 경험 했지만, 마을에는 자치의 철학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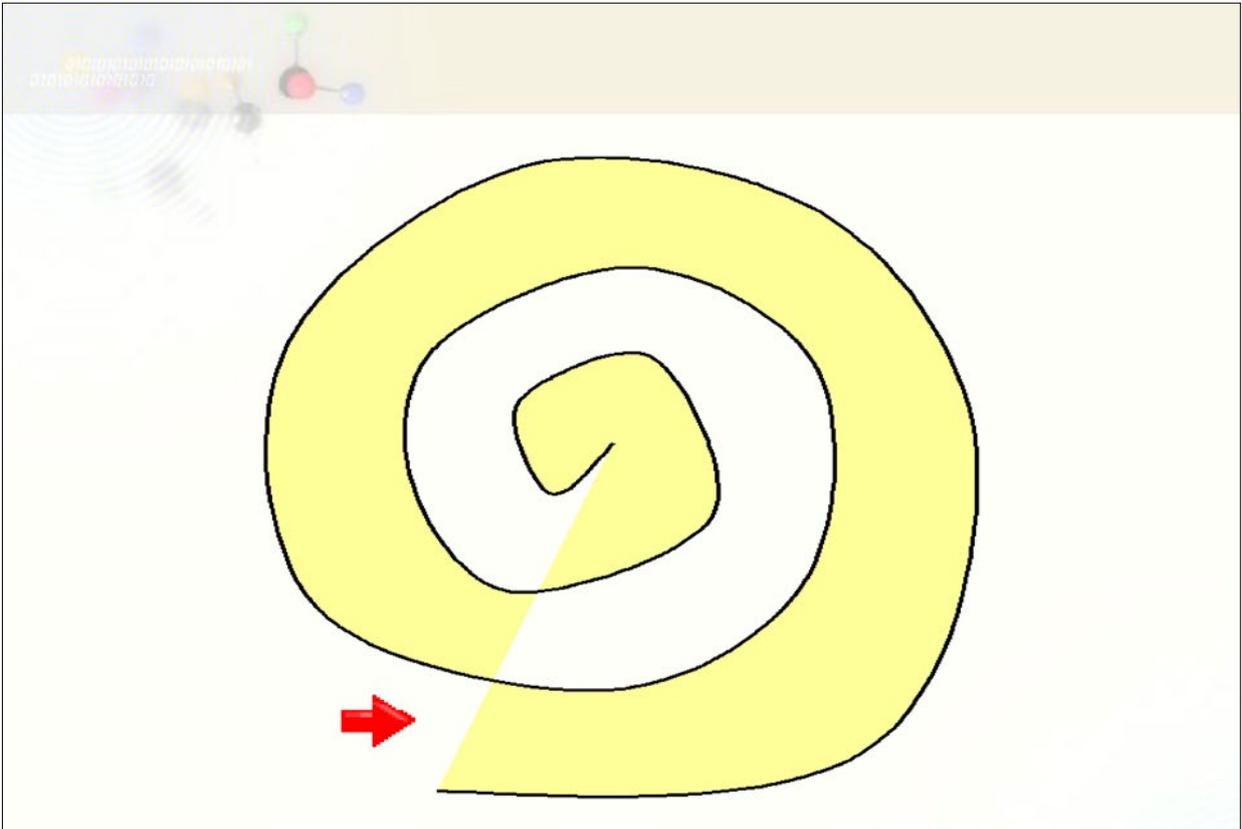
(중략) 치즈마을은 부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치즈마을의 주요 보직을 맡아 모두가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또 외부의 전문가집단과 연계하여 자체 마을 발전계획 및 일상적 컨설팅 및 자문을 받고 있다.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1사1촌, 1교1촌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하고 숙박하는 놀라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치즈체험, 낙농체험, 농사체험 등으로 이뤄지는 체험행사를 이끄는 강사 역시 마을 주민들이 맡고 있다. 체험객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외부 인력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여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 및 체험활동을 통해 오늘날 임실 치즈마을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치즈마을의 성과는 비록 해체되었지만 친목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농사실천농민회의와 매월 정례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월례회 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또 인근 기림초등학교 학생 중 상당수가 치즈마을에 살고 있는데, 지역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여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기찬 마을, 활력 있는 농촌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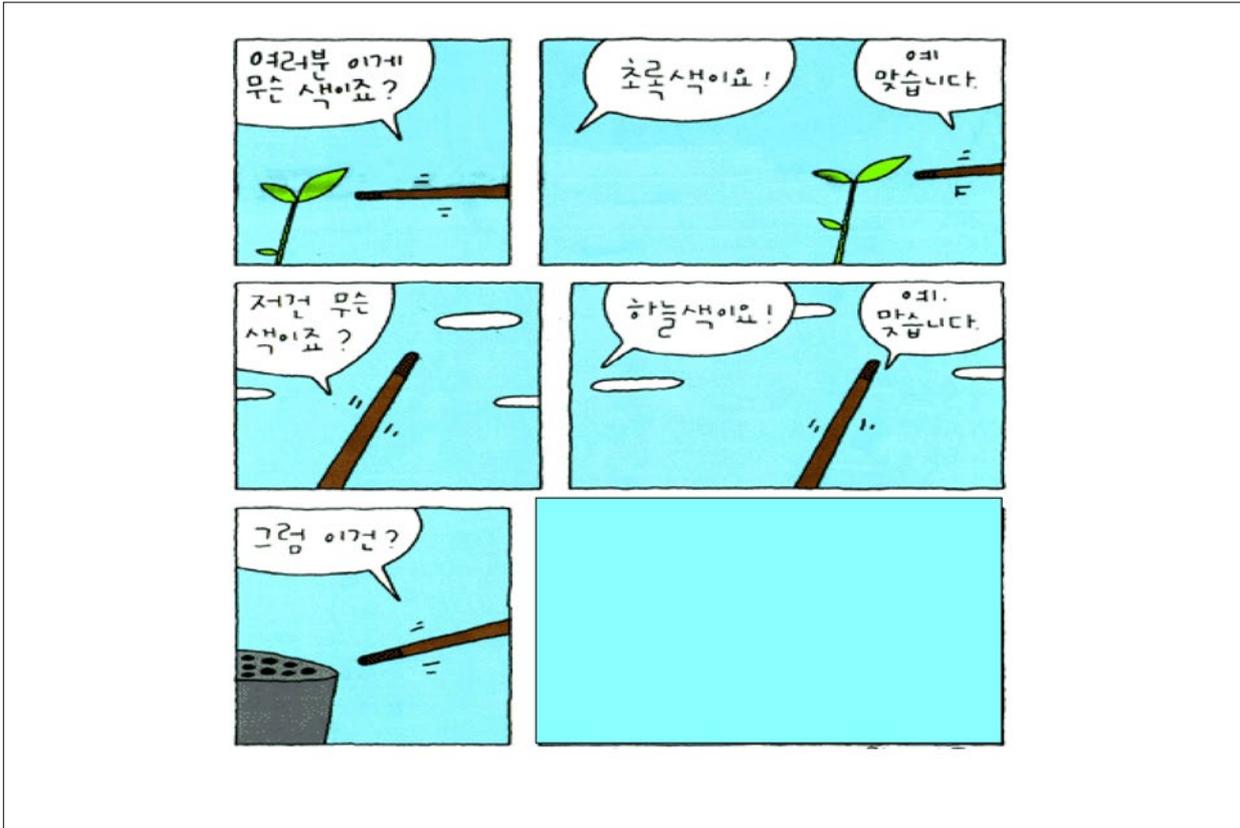
조재학, 2021, [모두의 민주주의]중에서)



임실 치즈마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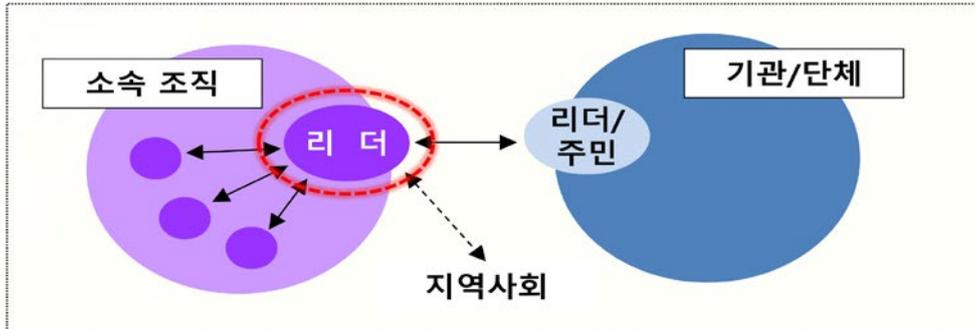
다르다 vs 틀리다

()!

은 몸과 마음으로!!

리더와 의사소통

- 리더 = ()에 서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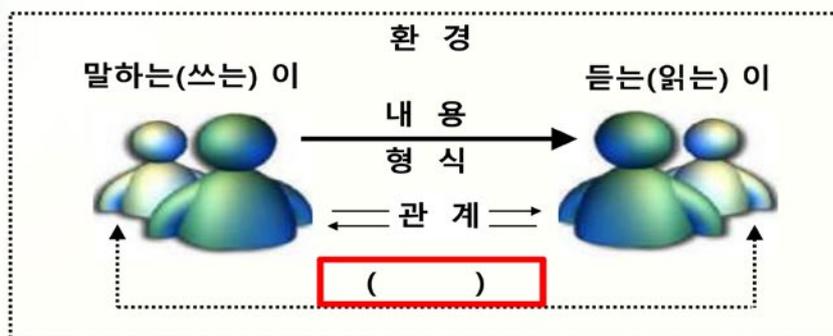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사업과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의 86%는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행복한 경영 이야기' 中

의사소통의 구조



주체

관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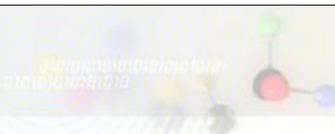
형식

환경



이야기 퀴즈

1. 주인이 불을 끈 이후에 남자가 나타났다.	T	F	?
2. 도둑은 남자였다.	T	F	?
3. 나타난 남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T	F	?
4. 금전등록기를 연 사람은 주인이었다.	T	F	?
5. 주인이 금전등록기 속의 내용물을 가지고 달아났다.	T	F	?
6. 누군가가 금전등록기를 열었다.	T	F	?
7. 돈을 요구한 남자는 금전등록기의 내용물을 훔친 후 달아났다.	T	F	?
8. 금전등록기에는 돈이 있었지만, 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T	F	?
9. 도둑은 주인의 돈을 요구했다.	T	F	?



이야기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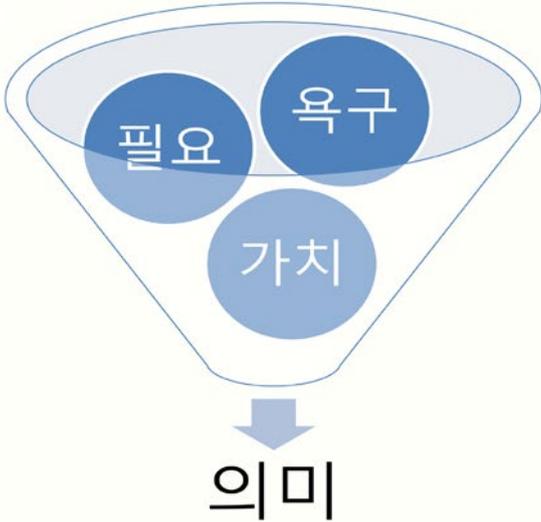
10. 주인이 불을 끄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상점에 나타났다.	T	F	?
11. 남자가 나타난 것은 대낮이었다.	T	F	?
12. 나타난 남자가 금전등록기를 열었다.	T	F	?
13. 누구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T	F	?
14. 이 이야기는 단지 3명이 등장하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3명은 상점의 주인, 돈을 요구한 남자, 그리고 경찰이다.	T	F	?
15. 사건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금전등록기가 열렸다. 그 속에 든 내용물을 도둑 맞았다. 어떤 남자가 상점에서 뛰어나갔다.	T	F	?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 듣는다.

- 스티븐 R. 코비



대화 속에 담긴 의미란?



필요 욕구
가치
↓
의미

以聽得心

이 청 득 심

()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이다.

以聽得心
이 청 득 심

귀

덕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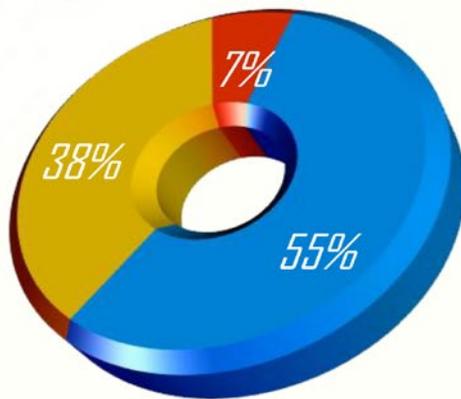
聽

왕

마음

왕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들어야 한다!

메리비언의 법칙



■ 시각적 이미지

■ 청각적 이미지

■ 말의 내용



앨버트 메리비언

소통의 핵심은
세련된 대화 기술의 변화보다
우리 자신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식의 변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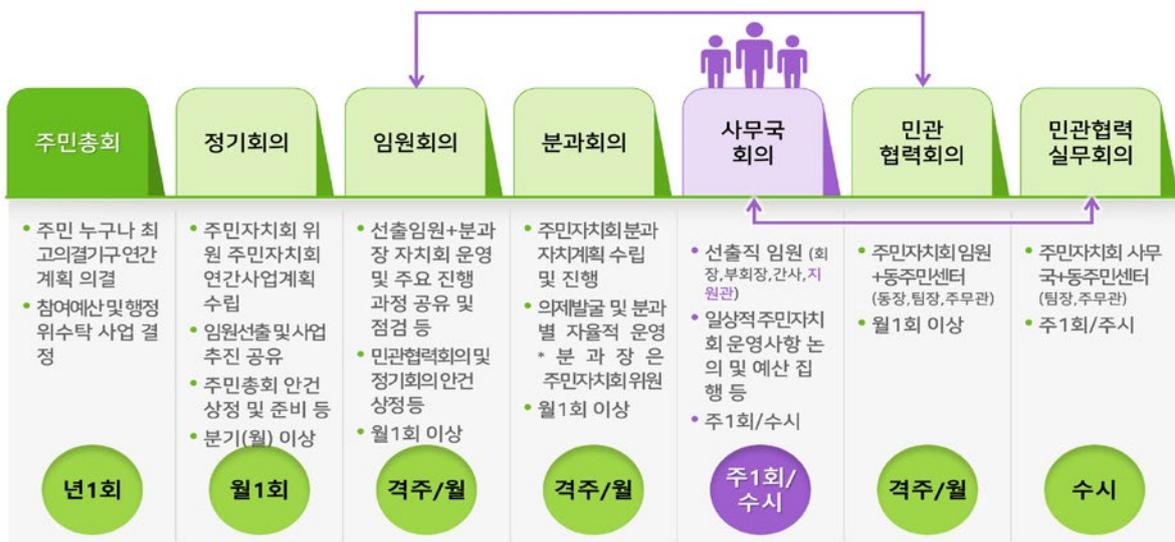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회의진행법



회의를 잘하는 방법

떠오르는 생각을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 회의 체계 및 종류



비생산적인 회의 심리와 징조

-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댄다
- 말이 없다가 회의가 끝난 후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
- 회의시간에 시계를 자주 보거나 하품을 한다
- 일부 소수자 발언이 너무 많고, 일부 발언이 장황하고 길다
- 줄거나 낙서를 해도 상관없다
- 아이디어는 내지 않고 남의 의견에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다
- 시간 부족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도대체 무슨 결론을 얻었는지 모른다
- 판단근거가 충분해도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며, 이유없이 결론을 미룬다
- 결정 내린 것은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 끝나고 나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 무슨 일로 모였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회의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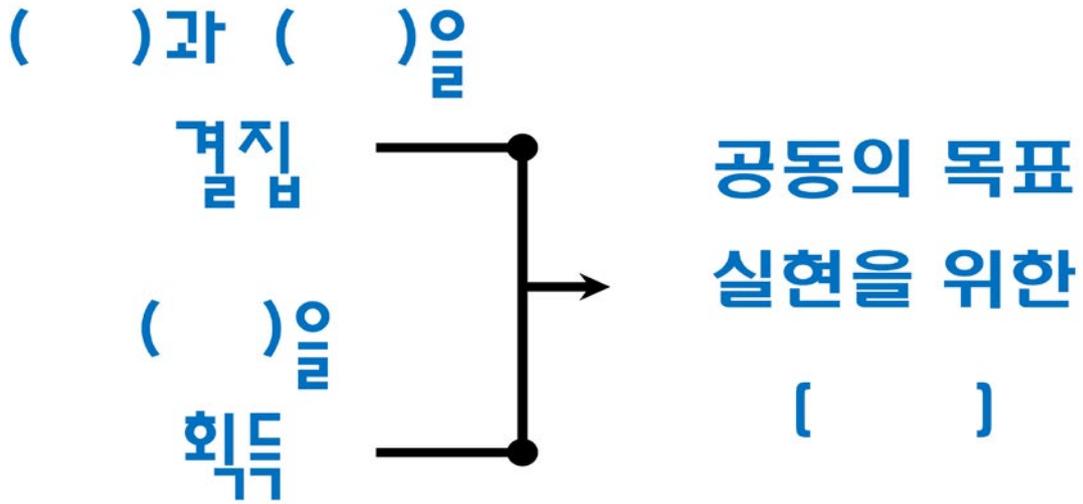
	점 검 내 용	약점	보통	강점
1	회의의 기본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고, 회의에서 는 기본원칙이 지켜진다.			
2	가급적 참가자 모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3	안건 자체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4	사전에 회의 목표와 안건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분명 하게 공유된다.			
5	참가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제안, 역량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다.			
6	참가자들간에 상호 경청하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점 검 내 용	약점	보통	강점
7	회의에서 사회자(의장)가 중립을 지키고, 특정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8	사회자(의장)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과 아울러 참가자들은 사회자를 돕는 분위기다.			
9	회의 중 발생하는 갈등, 의견불일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회의를 개선시키는 기회로 보면서 건설적으로 대응한다.			
10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가자들이 잘 알고 있고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효과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한다.			
11	회의의 결정사항은 임의로 반복되지 않으며,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한다.			
12	직전 회의의 결정사항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매 회의에서 점검·공유한다.			

주민자치회 회의 규칙

- 모두 참여하기
- 당당하게 말하기
- 다른 의견 존중하기
- 한번에 한 사람씩 말하기
- 3분 이내로 말하기

회의란?



회의를 잘 진행한다는 것?

형식

회의 절차
회의 순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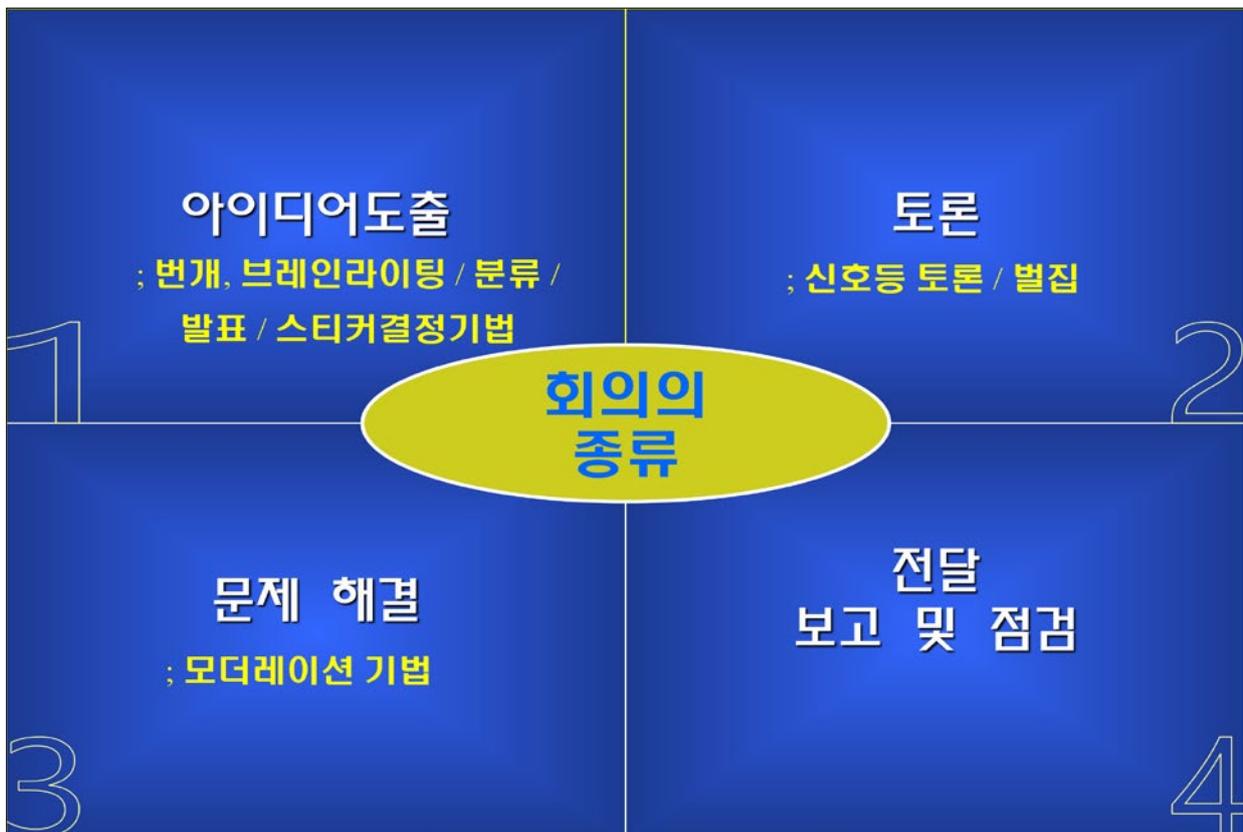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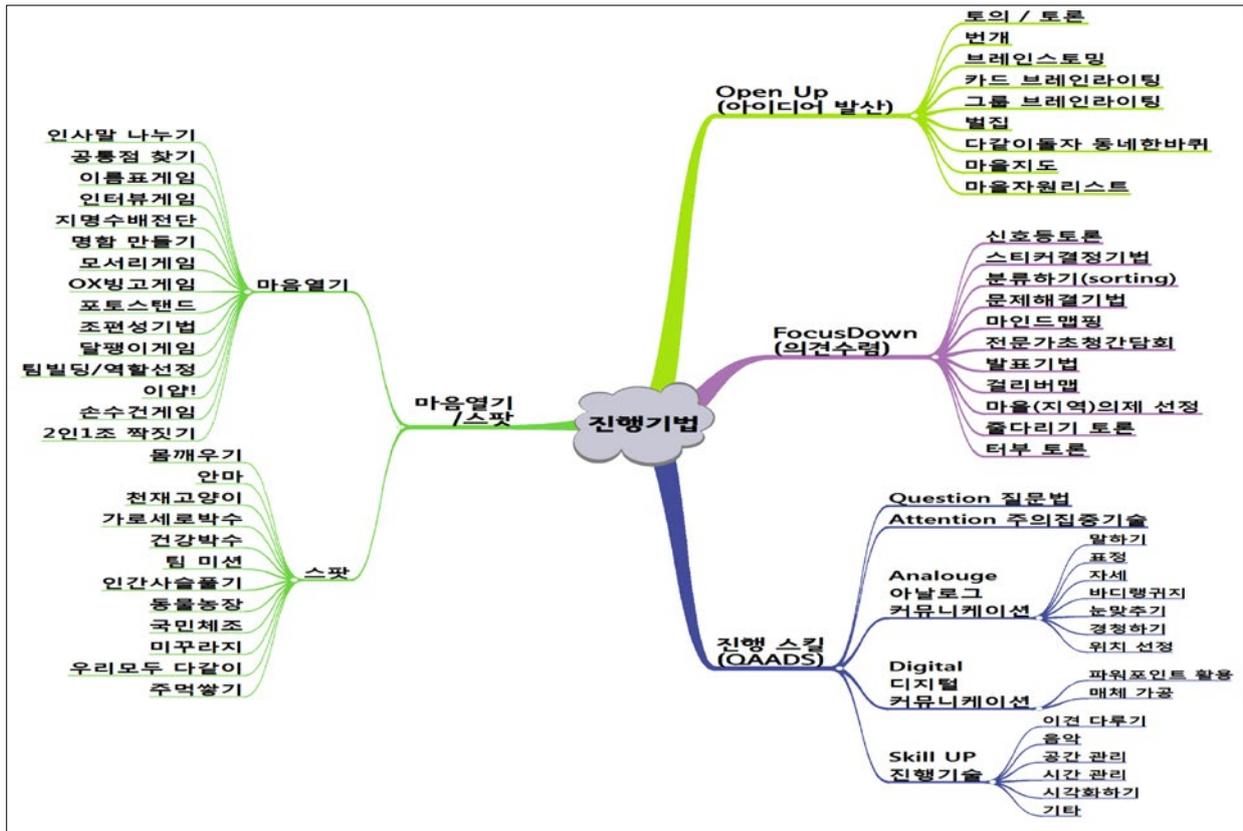
회의 원칙 준수
생각열기 / 결과도출

회의 진행의 내용

생각을 열고(Open Up)



의견을 정리함(Focus Down)



번 개

진행방식 설명

주제 제시

의견 듣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장해야!
진행과정에 토론이 일어나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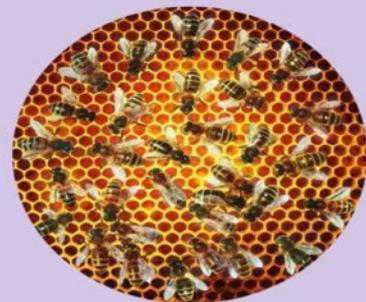
벌 집

2-3인씩 짝짓기

주제 제시

토의

(대표가 발표)





찬성이면 초록색 카드

반대면 빨간색 카드

중립이거나 또 다른 생각 있으면
노란색 카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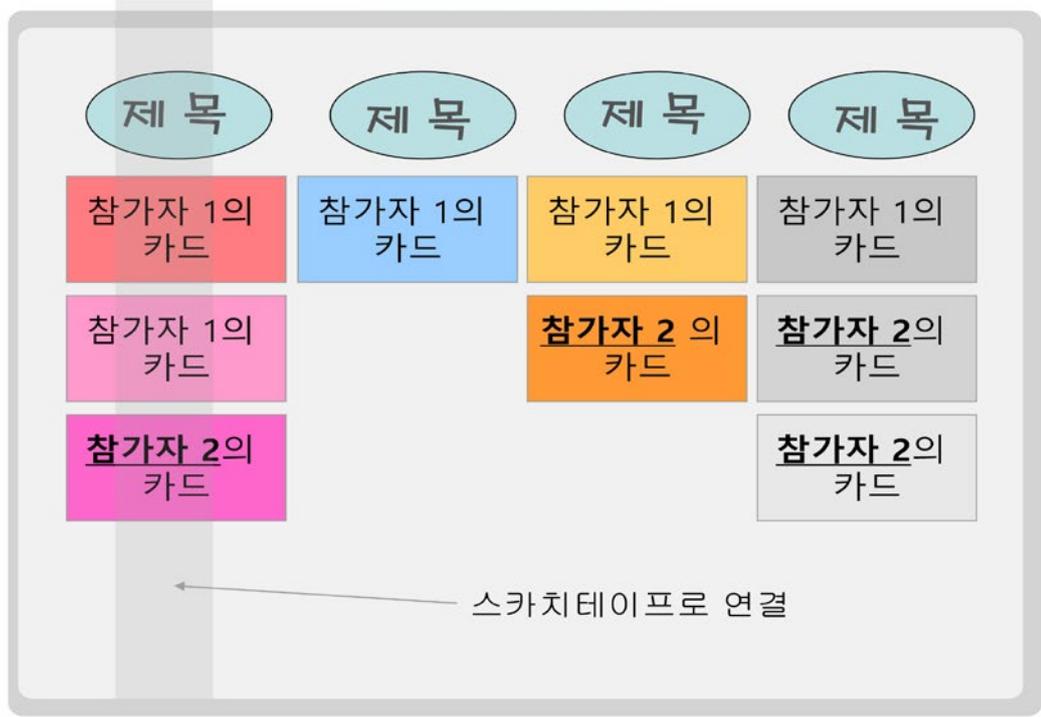
- 말없이
- 비판 금지
- 질보다 양
- 1카드 1아이디어
- 컨닝 환영!

생각나는 대로 쓰기

주제 제시
 규칙 소개
 쓰기
 유형별 분류
 발표

말없이
 비판금지
 질보다 양
 1카드 1아이디어
 컨닝 환영

분류방법



주민자치회 회의 활성화 방안

1. **간소화하라!** : 필요 없는 회의 줄이기
2. (안건을) **구분하라!** : 보고 · 전달 / 심의 · 결정
3. (역할을 나누고) **위임하라!** : 임원회의, 분과, 소모임 등
4. **시각화하라!** : 특히 복잡한 사안일수록!
5. **공유하라!** : 사전, 사후 공유 철저
6. **실행하라!** : 회의의 궁극적 목적은 실천
7. (원칙을) **지켜라!** : 회의 결과에 대한 임의반복은 절대 금지!

3

모두의 주민자치를 위하여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Decide_Madrid
Entrar Registrarse

Inicio Debates Propuestas Votaciones Procesos Presupuestos participativos Órganos ▾ Ayuda

Debates ciudadanos

Ayuda sobre los debates ciudadanos

Toda la ciudad

Empieza un debate

Nuevos Más activos Mejor valorados

Aplciacion de S.E.R. - DISTRITO CIUDAD LINEAL y posiblemente a otros distrito.

4 Comentarios • 09/11/2022 • JRMS

Buenas tardes,

Abro este debate porque lo que en principio era una queja

Estacionamiento Regulado S.E.R.
- sin arpación popular.

85%

15%

5 votos

LAZOTEA

Ámbito de actuación

▾

Empieza un debate

Arganzuela

Barajas

Carabanchel

Centro

Chamartín

Chamberí

Ciudad Lineal

Fuencarral-El Pardo

El Pardo

Hortaleza

Latina

Moncloa-Aravaca

Moratalaz

San Blas-Cajalitzas

San Ildefonso

Uxama

Villa de Vallecas

Vicálvaro

PROPUESTA DE USO PALACIO DE



주민이란?

1. ()

2. ()

3. ()

4.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

“변화의 힘은
여러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여러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 파워오브 원 (Power of One) -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조 재 학

chojaehak@hanmail.net

010-7900-7717

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2.21 조례 제1310호

(전부개정) 2020.12.11 조례 제1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구·동 행정과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자율성 확보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민법」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을 1명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

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및 결산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마을계획안

4. 주민자치회 예산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등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은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결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천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2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3조(설치)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먹거리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사회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7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경과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⑧ 수강의 취소 등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동장과 협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제출)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8월말일까지 익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 주민자치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2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4조(적용례)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선정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